



2022 농림축산식품부

# 규제업무 매뉴얼



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



농림축산식품부  
|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|



발간등록번호

11-1543000-004140-01



2022 농림축산식품부

# 규제업무 매뉴얼



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



농림축산식품부  
|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|

목차 | CONTENTS

01

CHAPTER

제1장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

- 1.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..... 06
- 2. 규제혁신 추진전략 ..... 07

02

CHAPTER

제2장 행정규제의 개념

- 1. 행정규제의 개념 ..... 10
- 2.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..... 13

03

CHAPTER

제3장 네거티브 규제

- 1.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..... 18
- 2.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..... 20
- 3.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유형 및 사례 ..... 22
- 4. 네거티브 규제 전환시 유의사항 ..... 25



**04**  
CHAPTER

**제4장 규제샌드박스**

1. 규제샌드박스 개요	28
2. 규제샌드박스 주요제도	29
3. 주관부처별 업무처리절차	34
4. 우리부 규제샌드박스 사례	38

**05**  
CHAPTER

**제5장 기타 규제 제도**

1. 규제 일몰제	40
2. 규제 비용관리제	45

**06**  
CHAPTER

**제6장 규제등록제도**

1. 규제등록제도의 개요	58
2. 규제등록 절차	59
3. 법령 유형별 규제등록대상 검토 절차	60
4. 규제등록 관련 Q&A	64

**07**  
CHAPTER

**제7장 우리부 규제혁신 사례**

1. 우리부 규제혁신 사례	68
2. 타부처 발표 사례	77



2022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업무 매뉴얼

CHAPTER 01

| 제1장 |

새정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

- 
1.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
  2. 규제혁신 추진전략



# 1

##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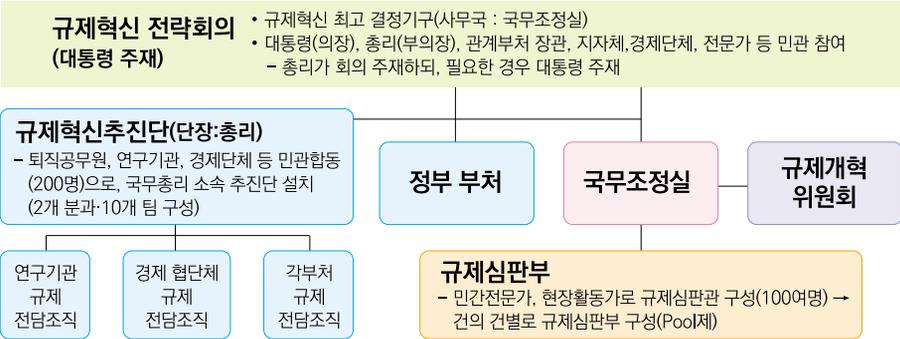
### 비전

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,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 선도

### 추진전략

<b>덩어리규제의 전략적 개선</b> - 퇴직공무원·기업·전문가 역량 결집, 덩어리규제 집중 발굴·개선	① 과제 발굴 • 경제단체, 연구기관, 부처 등의 규제전담조직 연계, 덩어리 과제 발굴 • 가능한 한 자체 개혁하며, 기타의 경우 적절한 기관에 이송 ② 개선안 마련 • 규제혁신추진단에 이송된 덩어리 규제를 종합 검토 → 개선안 마련 ③ 개선안 확정 •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결되는 경우 종결 • 미해결 시,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개선방안 논의, 최종확정 ④ 집행 및 점검 • 소관부처 책임하 후속조치 이행, 규제혁신추진단은 현장 점검·보완
<b>규제심판제도</b> - 기업·국민의 현장 규제 애로를 균형적 시각에서 심판(4단계)	① 소관부처 검토 • 온라인·오프라인 창구 통해 건의접수, 폭넓은 의견수렴 진행 • 건의 수용시 규제개선안 마련·추진 ② 규제심판부 판결 • 소관부처 불수용 과제에 대해 규제심판부가 이해관계자·부처 의견수렴(소관부처가 규제 필요성 증명) 통해 검토 → 권고안 제시 ③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 • 규제심판부 권고안 불수용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권고안 의결 •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 ④ 규제혁신 전략회의 • 규제개혁위 권고 불수용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검토, 최종 확정 • 추후 소관부처 이행, 국조실은 신속입법 지원(민관합동 이행여부 점검)
<b>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</b>	<b>규제샌드박스 플러스</b> • 이해갈등이 있는 규제는 중립적인 민간전문가 참여하여 해결방안 강구 • 심의기한(90일) 설정, 법률 개정 계획 수립 통보 의무화(실증종료 후 60일 이내) 등 신속한 규제개선 • 유사 특구 간 협의체 구성, 공동 기술개발 및 데이터 공유로 시너지 효과 창출 <b>네거티브 규제 확대</b> • 기업수요 등을 바탕으로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선정, 관련법령 전체 정비 • 파급효과가 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우선 적용
<b>규제 품질관리 강화</b>	<b>규제개혁위원회 재설계</b> • 민간전문가(규제심사관) 총원을 통한 심사 역량 강화(전문성·다양성 제고) • 규제연구센터(KDI, 행정연) 역할 및 역량 강화 <b>중요규제 심사 강화</b> • 위원회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 규제 범위 확대 <b>규제비용 획기적 감축</b> • One-In, Two-Out(200%) 추진(부처별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) <b>재검토키한 의무설정</b> • 신설·강화되는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키한 설정(3년) • 재검토키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서 통해 규제 폐지·개선

### 추진체계



## 2

## 규제혁신 추진전략

## 가.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

-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
- 대통령(의장)과 총리(부의장) 및 관계부처 장관, 기업·전문가 등 민·관이 함께 참여
-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여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 예정

## 나. 규제혁신추진단 운영

-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\* 혁파 목적
  - \* 多부처가 연관되어 중복되거나 복합된 규제(예: 비대면 의료·진료)
- 총리·민간이 단장, 퇴직 공무원, 연구기관, 경제단체 합동
-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
- 정부 부처, 연구기관, 경제 협·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(규제개혁 TF)을 설치하고, 규제혁신 추진단과 연계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·개선

## 다. 규제 심판제도 도입

-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하여 중립적·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
- 기업·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 타파
-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, 이해관계자·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 판단
-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·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·개선토록 할 예정

## 라.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지속 발전

### 1)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

-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'규제샌드박스 플러스\*' 로 개편하여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

\* 심의기한 설정(90일) 및 실증 종료 후 60일 내 법령 개정계획 마련 등

### 2)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

-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·방법 등을 담은 지침 마련 후,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편할 예정

## 마. 규제 품질관리 강화

-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·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역량 강화
- 중요규제 범위 확대
- 규제 신설·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비용 감축

\* 우리부는 국토부 등 12개 부처와 함께 300% 할당

\*\* (예) 법령 개정으로 규제가 신설되어 100억원의 규제 순비용 증가 시 타법령 등의 규제 폐지·개선으로 300억원의 규제비용 감축 필요

-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(3년) 설정
-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·개선하는 등 체계적·지속적인 사후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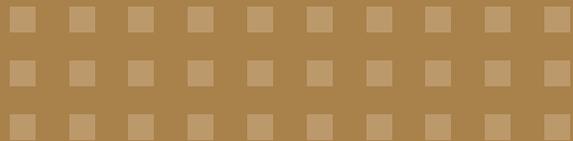
2022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업무 매뉴얼

CHAPTER 02

| 제2장 |

## 행정규제의 개념

- 
1. 행정규제의 개념
  2. 행정규제의 기본원칙





### 행정규제

- ❖ 행정기관(행정규제의 주체)이 국민(행정규제의 객체)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(행정규제의 내용)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(행정규제의 형식)된 사항
  - 행정규제의 주체 · 객체 · 내용 · 형식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판단
  - \*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는 행정규제를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 또는 조례 · 규칙에 규정된 사항”으로 정의

## 가. 행정규제의 주체 : 행정기관

### 1) 행정 기관

- ❖ 법령 등 또는 조례 · 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 ·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(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)
  -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·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됨
- ❖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, 특별지방행정기관, 소속기관, 합의제 행정기관 등
- ❖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

### 2) 예외

- ❖ 국회 · 법원 · 헌법재판소 ·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(법 적용 제외)
  - 원칙적으로 입법부, 사법부, 선관위, 감사원 등은 광의의 국가개념에 포함되나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주체에서 제외(법 제3조제2항)

## 나. 행정규제의 객체 : 자연인, 법인, 사단 및 재단

### 1)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는 자

#### ❖ 법령의 규제를 받는 자연인(내국인, 외국인)

- 국민은 자국내 사람(내국인)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규제대상(피규제자)인 내·외국인을 통칭

#### ❖ 법인,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등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근거해서 행하는 규제사무로 인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당하는 피규제자라면 자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

### 2)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

#### ❖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, 지자체 및 소속기관, 소속 임직원 등은 행정규제 대상인 국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

-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소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규제는 행정내부규제로 「행정규제기본법」의 적용을 받지 않음
-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 대한 권리제한·의무부과가 국민의 권리제한·의무부과를 가져오는 경우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는 국민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

#### ❖ 행정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위임·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행위의 주체의 지위에 있으며, 위임·위탁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행정규제 대상인 국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

- 행정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위임·위탁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정규제는 행정내부규제로 「행정규제기본법」의 적용을 받지 않음

## 다. 행정규제의 내용 : 행정목적의 실현

### 1)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

#### ❖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

- 국민에게 “부담적이나 수익적 규정이나”가 판단기준이 아니고 국민의 “**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**”가 판단기준임

## 2)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- ❖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 그것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
  - 국민의 일반적인 민사, 상사생활을 규율하는 민법, 상법이나 개별 행정법령 내에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 규정된 민법 혹은 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규정은 '특정 행정 목적'에 해당하지 않음
    - \*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민법 혹은 상법 등의 규제수준보다 강화된 요건 등을 개별 행정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임.

## 3)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

- ❖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토록한 사무
  - 범죄수사 등 형사관련 사무,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행형 및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무  
(예) 형법, 형사소송법, 행형법, 보안관찰법 등의 법령과 개별 행정법 내의 행정형벌(행정 질서벌은 제외) 규정
  - 병역법, 통합방위법, 예비군법, 민방위기본법,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징집·소집·동원·훈련에 관한 사항
  -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, 군사시설, 군사기밀보호에 관한 사항
  - 조세의 종목, 세율, 부과 및 징수와 직접 관련된 사항
    - \* 조세의 종목, 징수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류관련 면허, 업종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무 등은 행정규제에 해당

## 라. 행정규제의 형식

### 1) 행정규제는 '법령 등'에 규정된 것

- ❖ '법령 등'은 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, 조례, 규칙, 고시, 공고, 예규, 훈령을 지칭

### 2) '법령 등'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

- ❖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등록·규제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규제는 아니나,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가 됨(법 제4조)

## 마. 행정규제의 범위

- ❖ 행정규제의 구체적 범위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·규칙에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(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)
  - ① 허가·인가·특허·면허·승인·지정·인정·시험·검사·검정·확인·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
  - ② 허가취소·영업정지·등록말소·시정명령·확인·조사·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
  - ③ 고용의무·신고의무·등록의무·보고의무·공급의무·출자금지·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
  - ④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(사실행위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

## 2 행정규제의 기본원칙

### 가. 규제법정주의

#### 규제법정주의

- ❖ 규제법정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
  - \* 헌법 제37조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규정
- ❖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(헌법 제37조제2항)
- ❖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은 알기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(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1항)

## 1) 규제를 규정할 수 있는 '법령 등'의 범위

- ❖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,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, 아울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임
- ❖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, 조례,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
  - \* 조례, 조례규칙의 경우도 헌법 제117조제1항에 의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, 행정규제 기본법 및 개별법률의 근거범위 내에서 규제가 가능함
- ❖ '고시 등'에는 원칙적으로 규제를 규정할 수 없으며 법령 조례의 위임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로서 전문적, 기술적, 경미한 사항에 한해서만 정할 수 있음
- ❖ 지침, 교육자료, 지시 등에는 새로운 규제를 정할 수 없으며 해당규제의 운영·집행절차내용의 명확화 등에 관한 해석적인 사항만 정할 수 있음

## 2) 행정부관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

- ❖ 법령 등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이 되지않은 경우 행정부관(허가조건, 준수사항 등)만으로 과도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음
- ❖ 법령 등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위임된 경우나 행정처분의 성질상 가능한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제한적된 범위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, 새로운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별개의 규제를 정할 수 없음
- ❖ 기속행위의 경우 '법령 등'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
- ❖ 기속행위(신고 등)에 대한 부관의 경우는, 신고와 관련된 권고적·계도적인 사항이나 신고행위와 관련되어 타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한 행정안내 등에 한하고 새로운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
  - 다만, 신고의 성질에 따라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(본래 의미의 신고)의 경우에는 그것이 관계행정기관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므로 규제인 부관 등을 붙일 수 없으나, 신고가 사실상 허가등인 경우는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행정부관은 가능함

## 나. 규제의 시의성 및 불가피성

- ❖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현상의 문제점이 중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 규제가 시급하게 필요하여야 함
  - 규제 도입시 기존규제의 활용가능성 또는 타법령의 유사규제 여부를 확인하여 규제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
- ❖ 불가피하게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한 규제를 도입시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

## 다. 규제수준의 적정성(비례의 원칙)

- ❖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 함
  -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서는 안 됨
  - 행정편의주의 시각에서 규제목적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도한 내용을 규정하여서는 안 됨

## 라. 규제순응의 실효성

- ❖ 규제는 일반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어야 함
  - 일반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규제는 법규 위반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거나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음
- ❖ 사회적·기술적 여건 규제집행 일선 공무원의 현실 우리나라의 실태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



CHAPTER 03

| 제3장 |  
네거티브 규제

- 
1.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
  2.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
  3.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유형 및 사례
  4. 네거티브 규제 전환시 유의사항





### 네거티브 규제

- ❖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, 포지티브 규제(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)의 반대 개념

### | 참고 |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 비교

#### 포지티브

- 원칙금지, 예외 허용
- 법령에서 허용요건 규정
- 열거된 것만 제한적 허용
- 국가의 감독·규제 위주 법체계
- 융합 등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 곤란
- 유해행위·영업의 사전규제에 초점

#### 네거티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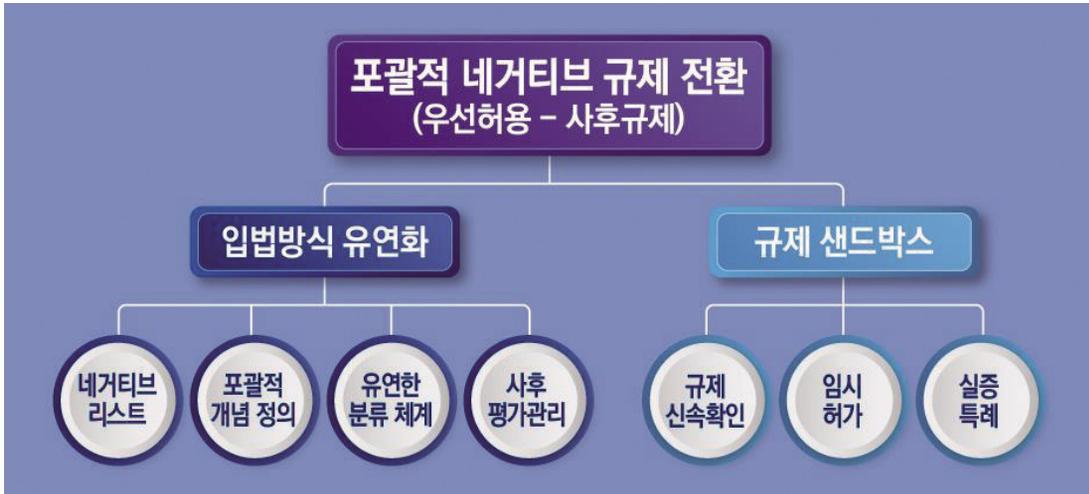
- 원칙허용, 예외 금지
- 법령에서 금지요건 규정
-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
- 민간의 자율·창의 중심
- 융합 등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
- 유해행위·영업은 사후관리를 통해 방지

#### 네거티브 규제 예시

-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0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
-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0항에 따른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
-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0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.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0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다.

## 가. 네거티브 규제의 원칙

- (우선 적용) 규제를 신설·강화하거나,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
- (최저 국제수준)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따라 열거되는 금지사항은 최소한도로 규정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‘최저 국제수준’으로 전환하여야 함
- (명확성) 금지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
  - \* (예시) ‘공익을 저해하는 경우’를 허가의 제한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함
- (예측 가능성) 국민들이 법규를 보고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예측할 수 있어야 함
- (실효성)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함
  - \* (예시)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혜택이 규제로 인한 공익 보호보다 클 것
- (합목적성)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할 때에는 기존 요건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함
  - \* 기존 요건을 그대로 차용하고 법 문안 표현만 네거티브 식으로 바꾸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도입 효과를 감소시킴
  - \*\* (예시) 구체적 허가 요건을 유지한 채 “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”를 → “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외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”로 변경하는 것 지양



### 네거티브 규제 유형

- 네거티브 규제 유형은 △첫째 입법방식의 변화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구현하는 유형과 △둘째 신산업·신기술의 등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(규제 샌드박스)를 활용하여 네거티브 규제 체계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으로 구분



###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

-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사후 규제 체계로,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,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체계를 위한 다양한 입법 방식과 혁신제도(규제샌드박스)를 포괄



### 협의의 네거티브 규제

- 협의의 개념은 “네거티브 리스트”를 의미하며,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령 서술 방식
  - \*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금지사항을 열거하는 방식(네거티브 리스트)으로만 정의하면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규제유형은 매우 제한적

## 1 유연한 입법방식

-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유용성 극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재정립 필요
  - 협의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인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외에도 △포괄적 개념 정의 △유연한 제품 및 서비스 분류 △사후 평가·관리 등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필요

## 2 규제샌드박스(혁신 제도, 제4장에서 후술)

- **(개념)**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대상으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조건하 규제를 일부 면제, 유예하여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
  - 혁신 사업자가 기존 규제 부담 없이, 한정된 소비자·지역 대상 테스트 가능
- **(목적)** 새로운 제품·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·기간·규모 등이 제한된 시장 환경에서 시범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신산업·신기술의 활성화 지원
- **(기대효과)** 기존 규제와 충돌하거나 인증 기준 등 규제가 없어 시장 출시가 막힌 혁신 신서비스·제품의 안정성 및 사업성 검증

### 규제샌드박스(Regulatory Sandbox)

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(탄력적용) 신사업을 테스트(시범사업) 하도록 하는 것,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

## 1 포괄적 개념 정의

※ 인허가 대상(사업, 제품·시설, 시설·장비의 재료(소재)의 범위·종류) 또는 지원대상(업종 범위, 기업, 사람)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

☞ (방법) ① 개념 자체를 광범위하게 규정 (개념 a → 개념 A)

② 개념속 종류·범위를 확대 (개념 A = a, b, c +d)

① 기존 법령에 **요건과 기준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되어** 있는 규정은 **개념의 범위 확장**(개념 a → 개념 A)

## ●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가 범위 확대

**기존** 양봉, 양잠 외 곤충사육자는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없음

**개선**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타 곤충농가가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방안 마련

## ●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한 농업인 자격요건 네거티브화

**기존** 농업인 자격을 포지티브로 규정

**개선** 직장인을 제외하고 폭넓게 농업인으로 인정

\* 국민연금법의 사업장 가입자와 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

② **개념 정의에 일부 품목을 나열하고** 있는 규정은 관련 신산업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**개선** (개념 A = a, b, c +d)

## ● 농산물 포장재로 다양화

**기존** 골판지, 폴리에틸렌(PE)대 등 7종류로 규정

**개선**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신소재까지 확대

## ● 농업재해의 범위 확대

**기존** 현행법상 가뭄, 홍수, 호우, 해일, 태풍 등을 농업재해로 규정

**개선** '황사' 추가

## ● 간척지 조성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 확대

**기존** 단년생 작물 경작, 농업기술 관련 시험·연구용 경작, 향토문화 축제에 한정

**개선** '문화관광 관련 조형물, 산책로, 간이 휴게시설 등' 을 추가

## 2 유연한 분류체계

※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새로운·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(혁신) 카테고리를 신설

☞ (방법) ① 단순 혁신카테고리

② 000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한 유형을 허용

③ 동등 이상의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경우 허용

④ △△의 장이 일정조건하에 지정하는 대상을 허용

## ● 가축시설 소독방법 다양화

**기존** 가축시설의 소독방법을 소독약품의 종류별·대상별 열거

**개선**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소독방법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허용

## ● 국가식품클러스터 '글로벌식품존' 입주조건 변경

**기존** 외국인 투자기업만 글로벌식품존 부지에 입주 가능

**개선** 국내기업도 해당 부지에 입주 가능하도록 입주조건 변경

### 3 네거티브 리스트

※ 허용대상을 한정 열거(포지티브 리스트)하는 방식 → 금지 대상만 열거(네거티브 리스트)하고 나머지는 허용

\* 금지사항을 나열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 허용, 금지대상의 유형은 특정한 행위·물품·특정사업·활동영역 등 다양

- ☞ (방법) ① 허용대상 열거 삭제 (→모두 허용)  
② 허용대상 열거 → 안전, 공공질서 등을 저해하는 대상을 제외(금지)하고 모두 허용  
③ 전면 금지 → 일정조건(장소·목적)하 허용  
④ 모든 대상에 의무이행 부가 → 의무이행 대상을 한정(의무대상리스트), 나머지는 의무경감·면제

#### ● 유통·판매가 가능한 곤충 규격 네거티브 전환

**기존** 유통·판매가 가능한 곤충 규격 규정(포지티브)

**개선** 유통·판매가 금지되는 곤충의 규격만 규정하고 모두 허용

### 4 사후 평가·관리

※ 사전 심의·검사 의무를 면제·완화하고 자율심의, 사후 평가·관리를 도입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

- ☞ (방법) ① 심사 의무화 → 자율심의(또는 생략) + 사후 관리  
② 사전 구비 → 사후 적정성 검사  
③ 허가제 → 등록제 + 사후 책임 부여  
④ 부분별 허가요건 준수 검사 → 전체 총량 평가

#### ● 농약 재등록 제도 개선

**기존** 농약 제조업자는 농약 재등록시 별도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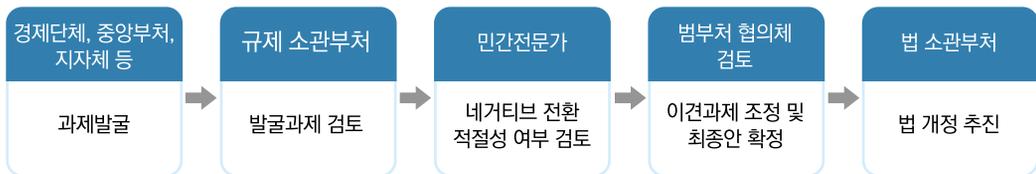
**개선** 재등록시 자체 검사성적서로 대체, 적합성 검토후 재등록



### 네거티브 규제전환시 고려할 점

- ① 네거티브 전환을 위해 발굴한 규제의 내용이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인지 확인
- ② 해당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시 함께 적용하여야 하는 기존 법령이 있는지 검토
- ③ 네거티브 전환을 통한 경제적·사회적 효과 및 부작용 없는지 점검
- ④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시장 모니터링과 제재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임

### ●●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절차 ●●



#### 1) 네거티브 규제 도입 목적 확인

-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△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거나 △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인지 확인
-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각 부처의 소관 법령중에서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, 그 다음 단계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활용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임

#### 2) 연관 규제 일괄 정비

-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실효성 제고와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동시에 전환이 필요한 법령이 있는지 점검

\* (예)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-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위치정보법 등 검토 필요

### 3) 네거티브 전환 효과 검토

-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예상되는 신시장 창출 및 신기술 연구·개발 활성화 등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경제적·사회적 효과 도출
- 네거티브 규제전환 도입 시 국민의 생명·안전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지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
- 참여한 이해 상층 및 가치 충돌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 절차 마련 등 해결 방안 모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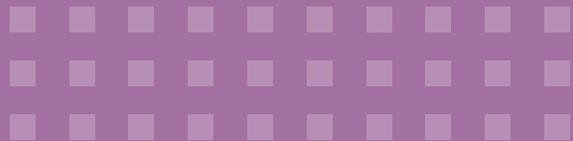
### 4) 사후 시장 모니터링 및 제재 체계 구축

- 사전규제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 새로운 방식의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
  - 그러나 규제 당국은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
- 따라서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전 규제 방식에 의해 시장을 관리해 오던 관성을 제거하고 네거티브 방식에 맞는 사후 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려 필요
- 정부 주도의 시장 모니터링은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려우므로,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민간부문과 협업 고려
-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따라 확대된 자율성을 피규제자(기업과 국민)가 오용·남용하지 않고 스스로 공정한 원칙을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
  - 예컨대 피규제자의 자율성 오·남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피규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

CHAPTER 04

| 제4장 |  
규제샌드박스

- 
1. 규제샌드박스 개요
  2. 규제샌드박스 주요제도
  3. 주관부처별 업무처리절차
  4. 우리부 규제샌드박스 사례



## 가. 추진 배경

- AI, 빅데이터 등 **혁신기술을 활용한 新제품·서비스의 시장출시 가속화** 등을 위해 **규제샌드박스 도입**
  - \* 새로운 제품·서비스에 맞는 인증·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, 기존 법령 적용이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

## 나. 개념 및 법적근거

- ❖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, **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·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하(시간·장소·규모)에서 규제를 면제·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**
- ❖ (법적 근거) **행정규제기본법 + 개별 6법에 근거해 운영**
  -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기본법으로서 **행정규제기본법 개정**(19.7.17 시행)
    - **先허용·後규제**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제시
  - ICT융합, 산업융합, 혁신금융, 지역혁신 등 6대 분야별 법령 제·개정
- ❖ (추진 체계) **국무조정실(총괄) 중심 각 분야별 주관부처(5개) 협업체계로 운영**
  - (주관부처) **소관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 운영중**
    -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는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(국무조정실 주관)를 통해 점검·조정
    - 각 부처는 민관합동 규제특례 심의위원회(위원장 : 주관부처 장관)를 운영하며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 심의·의결
      - \*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추가로 '규제자유특구위원회(위원장: 국무총리)'를 상위 위원회로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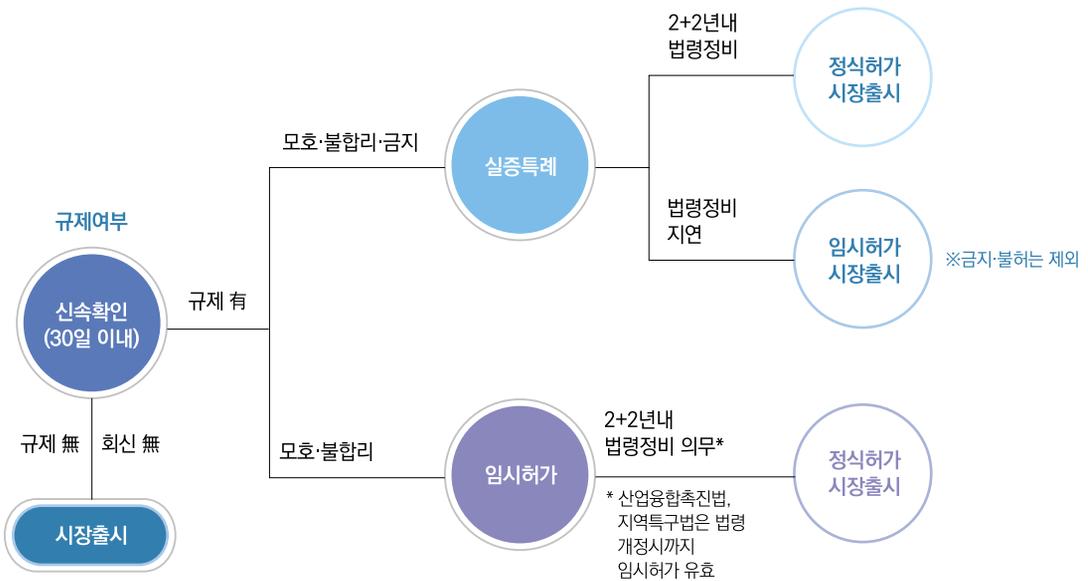
## ● ● 규제샌드박스 체계도 ● ●



## 2

## 규제샌드박스 주요제도

### | 규제샌드박스 운영 절차 |



※ 실종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중

## 1) 실증특례

### 가) 정의

- 새로운 융합 제품·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·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·기간·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
-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·요건 등이 없거나,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,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 내 실증 테스트 허용
-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 추진

### 나) 실증특례 신청

- ※ ① 새로운 융합 제품·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·규격·요건이 법령에 없는 경우, 既 존재하는 기준·요건 적용이 곤란한 경우, ②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새로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제한된 구역·기간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실증특례 신청

#### ●● 규제 실증특례 신청절차 ●●

- ① 시범사업 신청(사업자 → 소관부처)
- ② 소관부처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, 규제특례심의위원회(민관합동)에 상정
- ③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 여부 및 범위(구역·기간·규모) 심의·조정
- ④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특례 부여

### 다) 실증특례 결정

- 규제특례심의위원회(민관합동)에서 해당 신제품·서비스의 혁신성·안전성, 시험·검증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 여부 의결
- 국민의 생명·건강·안전·환경 및 개인정보의 보호,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(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제6항)
- 규제특례 기간은 2년 이내에서 정함(1회 연장 가능),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음

## 라) 손해배상

- 실증특례를 받은 융합 신제품·서비스로 인한 **인적·물적 손해**를 보상하기 위해 **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**(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제2항)
- 규제특례심의회에서 **손해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**을 고려하여 **규제특례 여부 심의**(법 제10조의3 제6항)
-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융합 신제품·서비스로 인하여 인적·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. 단, 사업자가 고의·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책임면제

## 마) 규제개선

- 관계 행정기관은 규제특례 결과를 통해 법령 정비 필요여부를 검토하고, 조속히 **법령 개정**에 착수해야 함
-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(법 제10조의4 제5항)

## 2) 임시허가

### 가) 정의

-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(2년 이내)로 허가(1회 연장 가능)를 부여하는 제도
  - \* 실증 특례(시험·검증 목적) ↔ 임시허가(시장출시 목적)
-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

### 나) 임시허가 신청절차

- ※ 새로운 융합 제품·서비스에 대한 허가 **기준·규격·요건이 법령에 없는 경우**, 旣 존재하는 기준·요건 **적용이 곤란한 경우** 임시허가 신청

## ●● 임시허가 신청절차 ●●

- ① 임시허가 신청(사업자 → 소관부처)
- ② 소관부처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, 규제특례심의위원회(민관합동)에 상정
- ③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 여부 심의·조정
- ④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허가

### 다) 임시허가 결정

- 규제특례심의위원회(민관합동)에서 해당 신제품·서비스의 **혁신성·안전성** 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 의결
-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**조건을 붙여 시험·검사를 요구**할 수 있음(법 제10조의6 제6항)
- 임시허가 **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1회 연장\*** 가능(법 제10조의6 제9항)
  - \*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

### 라) 손해배상

- 임시허가 받은 융합 신제품·서비스로 인한 **안전사고 및 피해**를 보상하기 위해 **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**(법 제10조의6 제2항)
-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**손해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**을 고려하여 **임시허가 여부 심의**(법 제10조의6 제6항)
-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융합 신제품·서비스로 인하여 인적·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. 단, 사업자가 고의·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책임면제

### 마) 규제 개선

- 소관기관은 임시허가 받은 융합 신제품·서비스에 대한 **근거 법령을 조속히 정비**하여야 함(법 제10조의6 제12항)
- 허가 근거가 마련된 경우 임시허가 받은 사업자는 즉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(법 제10조의6 14항)

### 3) 신속확인

#### 가)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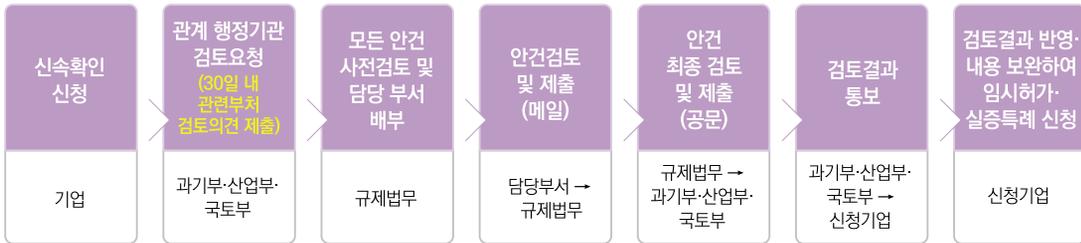
- 새로운 융합 제품·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·요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
  -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 최소화
  - 특히,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
- ※ 사업자 등이 융합 신제품·서비스에 대한 **규제 존재, 허가 필요여부** 등을 산업부, 과기부, 국토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

#### | 참고 | 규제특례 추진시, 국민의 생명·안전 우려, 환경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

- ① (생명·안전 검토) 국민의 생명·안전·환경 우려시 규제특례 제한
- ② (문제 즉시 대응)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·예상시 특례 취소
- ③ (배상책임 강화)사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, 고의·과실 입증책임 전환(피해자 → 사업자)

##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&amp; 산업통상자원부 &amp; 국토교통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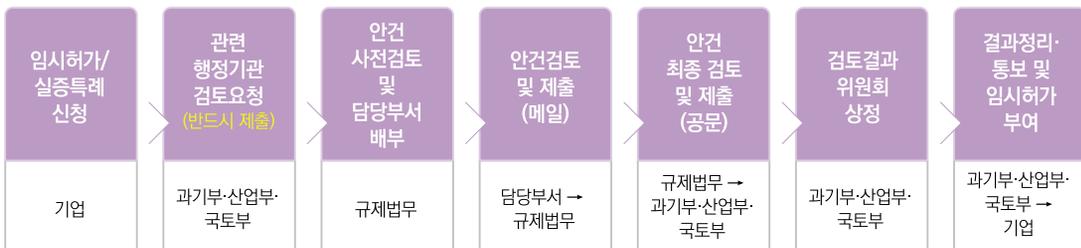
## ●● 신속확인 신청절차 ●●



## ●● 농식품부 소관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신청 사례 ●●

- ① 농업용 웨어러블 로봇(현대로템)
- ② 유해물질 저감 가축분뇨 퇴비화 시스템(한국엘앤에스)
- ③ 연료전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서비스(두산퓨얼셀)
- ④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(블록펫)
  - ☞ 신속확인 절차 후, 과기부 특례심의위를 거쳐 실증특례 부여('21.5월)
- ⑤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농업용 전동 고소작업차(대륜엔지니어링)
  - ☞ 신속확인 절차 후, 산업부 특례심의위를 거쳐 실증특례 부여('21.12월)

## ●●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신청절차 ●●



\* 전문위원회(주관부처 실장 주재) : 상정 안전 담당 국장 참석

\*\* 심의위원회(주관부처 장관 주재) : 농식품부 차관 참석

## 2 중소벤처기업부

### ● ● 규제자유특구 샌드박스 신청 절차 ● ●



## 3 금융위원회

### ● ● 금융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● ●



## 4 신청 및 심의절차

### 가) 사전컨설팅

- 규제샌드박스 접수 전담기관은 기업 요청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법률 자문,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

### 나) 신청

- 컨설팅 후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특례 신청
- ※ 2020년 5월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 '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'를 설치·운영하고 있어, 기업은 기존의 분야별 전담기관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신청·접수 가능

### 다) 심의

- 전문 분과위에서 관계부처와의 쟁점 협의·조정 후,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·의결
-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, 이용자의 편익과 더불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도 함께 심의하여 특례 부여 여부 결정



## 라) 분야별 문의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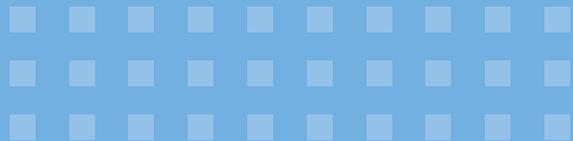
<p>(총괄)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홈페이지 : <a href="http://www.sandbox.go.kr">www.sandbox.go.kr</a></li> <li>- 전부처 샌드박스 현황 등 소개</li> </ul>	<p>(총괄)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홈페이지 : <a href="http://sandbox.korcham.net">sandbox.korcham.net</a></li> </ul>
<p>(과기부) ICT 규제샌드박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홈페이지 : <a href="http://sandbox.or.kr">sandbox.or.kr</a></li> <li>전화번호 : 043-931-1000</li> </ul>	<p>(산업부)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홈페이지 : <a href="http://sandbox.kiat.or.kr">sandbox.kiat.or.kr</a></li> <li>전화번호 : 02-6009-4088,4089</li> </ul>
<p>(중기부) 규제자유특구 샌드박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홈페이지 : <a href="http://rfz.go.kr">rfz.go.kr</a></li> <li>전화번호 : 044-204-7211</li> </ul>	<p>(금융위) 금융규제 규제샌드박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홈페이지 : <a href="http://sandbox.fintech.or.kr">sandbox.fintech.or.kr</a></li> <li>전화번호 : 02-6375-1523</li> </ul>
<p>(국토부)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홈페이지 : <a href="http://smartcity.kaia.re.kr">smartcity.kaia.re.kr</a></li> <li>전화번호 : 031-389-6555</li> </ul>	<p>(과기부)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홈페이지 : <a href="http://www.innopolis.or.kr">www.innopolis.or.kr</a></li> <li>전화번호 : 042-865-8800</li> </ul>

업체명(내용)	주요 내용	승인시기
① 나투스핀 (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업내용) 렌터카를 활용하는 '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'를 통해 펫택시 공급 유연성 확대 및 소비자 이용 편의성 개선</li> <li>• (기대효과) 소비자 이용 편의성 개선과 일자리 확대 및 신규시장 창출</li> </ul>	'20.6월
② 다자요 (농어촌지역 빈집활용 관광숙박업 육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업내용) 농어촌지역 빈집을 장기 임대하여 리모델링 한 후,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 제공</li> <li>• (기대효과) 농어촌의 일자리 확대 및 신규시장 창출, 숙박업 플랫폼 다양화</li> </ul>	'20.9월
③ 올핀 (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·판매 서비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업내용) 반려동물의 특성(종, 성별, 몸무게 등)에 따른 맞춤형 사료(펫푸드) 즉석 조리·판매 서비스</li> <li>• (기대효과)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건강한 펫푸드 이용 및 관련 신산업 창출</li> </ul>	'21.5월
④ 블록펫 / ⑤페이블 (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업내용)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영상을 촬영하고,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을 인식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(반려견 정보 취합·관리 시스템)에 등록</li> <li>• (기대효과) 동물등록과정을 간소화하여 등록율 제고, 동물등록비용 감소, 동물 구조·보호 비용 절감</li> </ul>	④ '21.5월 ⑤ '21.12월
⑥ 전남 e-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* (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적재정량 검증기준 완화) * (주)에스티 등 4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업내용) ①농업용 동력운반차 2인승 허용 및 최소 적재정량 제한 완화(200kg → 100kg), ②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연속운전 시험 기준 완화(3시간 이상, 25Km → 2시간 이상, 17Km) - 데이터 보강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의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농업용 동력운반차 실증특례 연장('21.8.9.~'23.8.8.)</li> <li>• (기대효과) 규제특구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농업기계 신산업·신산업 육성에 기여</li> </ul>	'19.8월, '21.8월 (연장)
⑦ (주)대륜엔지니어링 (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농업용 전동 고소작업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업내용)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만든 배터리팩을 장착한 농업 전동고소작업차 운영으로, 동력원으로써 배터리팩의 성능 안전성 검증</li> <li>• (기대효과) 규제특구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농업기계 신산업·신산업 육성에 기여</li> </ul>	'21.12월
⑧ 펫콤 / ⑨젠틀펫 (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업내용)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(염습, 추모 등) 진행 후, 정해진 지역(펫콤: 안산/젠틀펫: 문경)에서 차량 내 화장로를 통해 유해를 소각하는 서비스</li> <li>• (기대효과)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</li> </ul>	'22.4월

C H A P T E R 05

| 제5장 |  
기타 규제 제도

- 
1. 규제 일몰제
  2. 규제 비용관리제



## 가. 개요

- 법령(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및 고시 등)상 행정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·개선함으로써 경제·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
- 분류 : 효력상실형 / 재검토행
- 효력상실형 : 규제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가 폐지되게 하는 것
- 재검토행 :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, 개선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기형(재검토행기한이 일정 주기로 설정)과 기한형(재검토행기한이 일정 시점으로 설정)으로 구분

효력 상실형 일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결하려는 문제가 한시적이거나 규제효과가 일시적인 경우 적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규제</li> <li>- 선진국에 없는 우리나라 특수성에 의한 고유규제</li> <li>- 행정여건에 맞지 않거나 규제의 준수도가 저조한 규제</li> </ul> </li> </ul> <p>〈예시〉 제2조(유효기간 등) ① 제8조, 제11조제1항, 제15조제1항·제2항의 개정규정은 <u>2015년 12월 31일</u>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
재검토행 일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급변하는 환경, 신기술 관련 등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여 주기적인 규제 재검토 필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정 위기상황, 공공적 압력에 의해 충분한 비용편익분석 없이 서둘러 도입된 규제</li> <li>- 정보 등이 불완전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</li> <li>- 신기술 관련 규제,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규제</li> <li>- 통계치, 사회적 인식 등 가변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한 규제</li> <li>- 행정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주기형</b>      〈예시〉 * 우리부      제20조(규제의 재검토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대부분      감독에 대하여 <u>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</u> 일몰규제      말한다) <u>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</u> 하여야 한다. 해당</p>

기한형

〈예시〉

제58조(규제의 재검토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에 관한 별표 6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나. 적용원칙과 대상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속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신설·강화 규제에 대해 일몰을 설정해야 함
- 특히,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피규제자의 준수비용 등 부담이 큰 규제, 융복합·신산업 관련 기술발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규제는 반드시 일몰을 설정
- 단,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규제 조항은 일몰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

### ●● 일몰 적용 예외 조항 ●●

-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
-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
- 국가의 질서유지, 국민의 생명·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등 일몰 설정시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
- 외환·금융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,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쟁을 촉진하는 규범
- 수수료,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
- 국민과 기업에 규제비용 부담이 적어 규제순비용의 검증과정에서 간편심사가 적용되는 규제
-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
- 당해 제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는 규제
- \* 예 : 대기오염총량제(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, 제 16조」에서 매 5년마다 사업장별 오염물질 재할당, 매 10년마다 할당기준 재설정 규정)
- 기타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명백하거나 규제 재검토의 여지가 없어 일몰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규제 등

## 다. 신설·강화 규제의 일몰 적용방법

-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규제인지를 검토하여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반드시 일몰을 설정하여야 함

- 시장진입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인가?
-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규제 비용이 크거나(예: 10억 이상) 간접적인 규제부담이 상당한(예: 규제영향비용 100억 이상) 규제인가?
- 융복합·신산업, 신기술, 각종 표준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관련된 규제인가?

- 위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규제의 목적·내용 등을 고려하여 일몰 설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

- 일몰을 설정키로 결정한 규제는 일몰 유형(효력상실형/재검토행) 선택

- 부처 자체 규제심사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, 법령 개정 작업 추진

## 라. 일몰조항의 관리

- 각 부처는 규제일몰 설정 시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개별 규제의 운영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

- 각 부처는 개별 규제의 일몰 설정 시 이에 관한 정보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, 일몰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

-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매년 소관 일몰규제 도래 현황 등을 파악,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일몰 규제 관리

- 위원회는 각 부처의 일몰 관리계획 등을 검토, 필요시 개선의견 제시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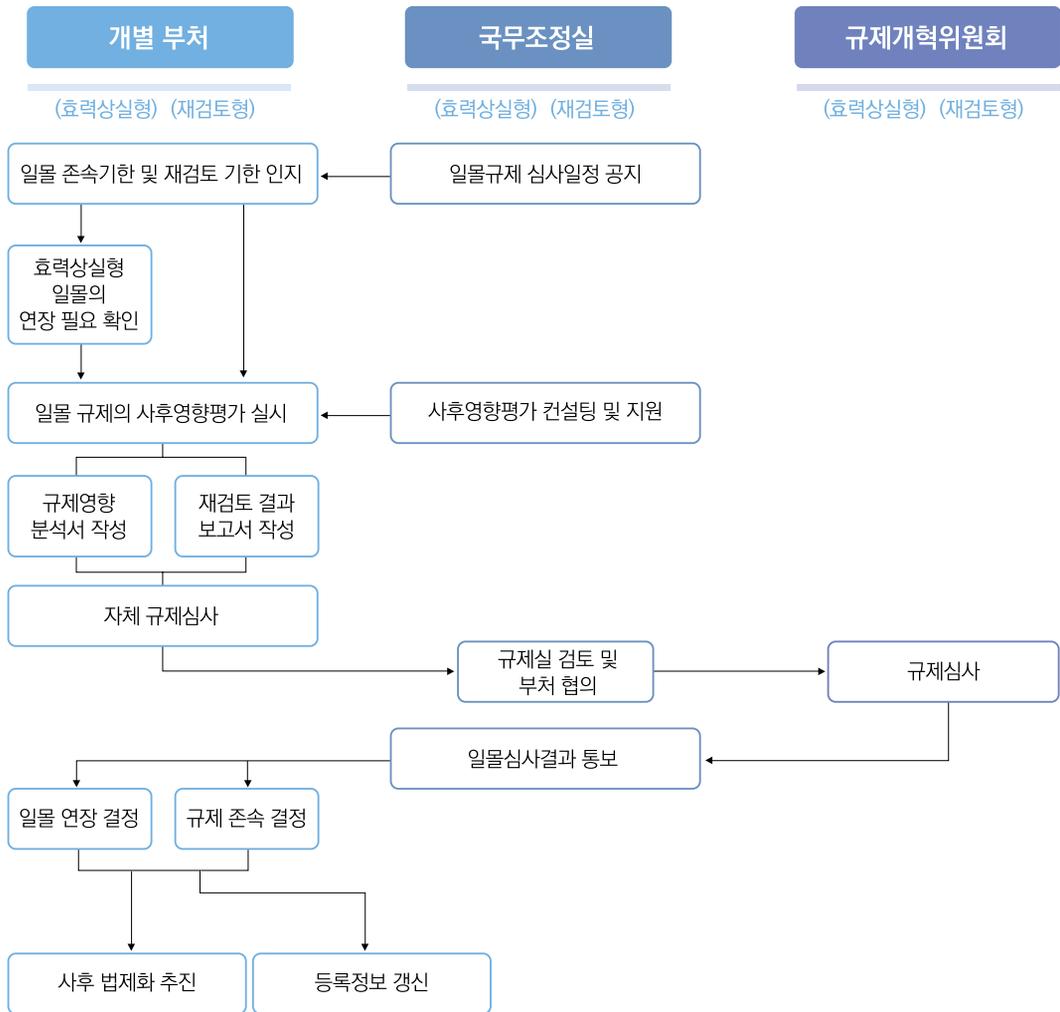
## 마. 일몰조항의 심사 및 재검토

- 효력상실형 일몰 규제는 해당 조항의 존속기한이 도래할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 상실\* → 그럼에도 불구하고, 불가피하게 규제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심사를 거쳐 해당 규제의 존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
\* 효력 상실시, 별도의 입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, 추후 별도의 법령 정비 과정에서 해당 조문의 폐지 등을 추진

- 재검토행 일몰 규제는 해당 조항의 재검토키한 도래 시, 규제의 시행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규제의 폐지 여부, 개선방향 등을 결정

● ● 심사 및 재검토 절차 흐름도 ● ●



Ⅰ 재검토행 심사절차 Ⅰ

① 각 부처는 재검토행 일몰 규제의 기한 도래시 해당 규제의 운영성과 분석을 하여야 하며, 이를 토대로 재검토 결과보고서\*를 작성

\* 재검토 결과보고서는 규제 및 일몰조항의 존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규제운용 실적·성과, 문제점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중심으로 작성

② 재검토행 일몰의 경우, 규제 문제의 지속 여부·집행성과 등을 토대로 규제 존속 필요성을 결정하고,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규제 집행과정상 문제점,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토록 하고, 규제내용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몰 기한 재설정

- ③ 각 부처 자체규제개혁위원회 및 위원회(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)는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재검토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, 위 심사기준 등을 참고하여 규제의 폐지·개선 여부, 일몰조항의 연장 여부 등을 결정
- ④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별 규제의 영구적인 존속이 필요하는 등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설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, 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일몰조항을 해제할 수 있음
- ⑤ 각 부처는 일몰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일몰 기한 도래 전 해당 법령에 대한 후속 입법 절차를 추진
  - \* 위원회는 각 부처의 일몰 도래 규제 입법 조치 현황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, 점검결과 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 가능
- ⑥ 재검토행 일몰 규제는 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폐지 / 규제개선·일몰연장 / 규제개선·일몰해제 / 규제존속·일몰연장 / 규제존속·일몰해제 등의 조치
- ⑦ 심사결과, 규제의 존속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, 해당 규제를 폐지하되, 후속 입법 조치를 즉시 진행
- ⑧ 심사결과, 규제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각 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개선권고 취지에 맞게 규제 내용을 수정하여 입법절차 조속히 완료
- ⑨ 심사결과, 규제를 존속하되 일몰을 연장 또는 해제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, 관련 법령 개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함

● ● 일몰규제의 재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항목 ● ●

항목	작성내용
규제환경 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규제설정 당시와 달라진 규제환경의 파악</li> </ul>
규제집행 성과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책성과평가 관점에서의 규제집행실적 제시</li> <li>•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에 비해 완화된 성과분석 적용</li> </ul>
이해관계자 의견수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규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</li> </ul>
부처 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친 이후 부처 검토의견을 최종 작성</li> <li>• 규제폐지, 규제개선, 규제존속 중 선택</li> </ul>

### 가. 규제비용관리제 개요

- ❖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4개 부처가 '16.7월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용중
  - \* 농식품부, 기재부, 과기부, 산업부, 국토부, 해수부, 중기부, 방통위, 금융위, 식약처, 산림청, 관세청, 교육부, 행안부, 문체부, 복지부, 환경부, 고용부, 여가부, 공정위, 개인정보위, 문화재청, 특허청, 질병청
- 국무조정실은 부처가 제안한 규제비용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비용전문위원회 설치('14.8)
  - 비용분석 검증 지원을 위해 한국개발원(KDI) 및 행정연구원(KIPA)에 규제연구센터 설치('14.8) \* KDI는 경제분야, KIPA는 행정·사회분야 담당
- ❖ 우리부는 자체적으로 시범추진계획('14.7)을 마련하였으며, '16년부터 국무조정실의 규제업무 평가에서 우수부처로 선정되는 등 적극 추진중
  - 규제비용관리제의 원활한 정착 및 운용 지원을 위해 '농촌경제연구원(KREI)'을 농식품 규제비용관리제 지원 '전문연구기관'으로 지정('14.7월)
  - KREI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설치('15.7월)
    - 3개팀(총괄기획팀, 평가분석팀, 규제영향평가팀), 7명으로 운영

### 나. 목적

- ❖ 규제에 따른 비용·편익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규제의 품질개선
- ❖ 규제의 신설·강화로 규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의 폐지·완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제 주체의 규제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

### 다. 기본방향

- ❖ 규제의 비용·편익 분석을 통해 피규제자에게 미치는 규제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규제 대안을 마련
- ❖ 단편적인 규제정비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시각에서 규제를 검토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
  - 신설·강화되는 규제에 영향을 받는 같은 법령내 또는 다른 법령에 포함된 기존규제의 폐지·완화 등의 규제정비 적극 추진

- ❖ 규제의 신설·강화 등으로 비용 증가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폐지·완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
  - 신설·강화 규제없이 별도로 규제 폐지·완화시에는 규제편익액을 적립(banking)하여 운용하는 등 규제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
- ❖ 정책개발 및 입법초기 단계부터 규제비용을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용

## 라. 적용대상 및 운용방법

### 1) 적용대상

- ❖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상의 규제로서 피규제자(농가, 농업경영체, 농식품기업 등)에게 직접적인 비용 및 편익을 발생시키는 규제
  - 신설·강화 규제뿐만 아니라 폐지·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적용
- ❖ 다만,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비용 관리대상에서 제외

#### ●●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제외 사유 ●●

- ①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
- ②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제
  - 단, 조약이나 국제협정 준수를 위한 최소 요건 이상으로 국내 규제수준을 설정(gold plating)하여 피규제자에 추가 비용을 유발할 때에는 비용관리제 적용
  - ※ 국제적 권고사항 등을 도입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이행 합의된 사항이거나, 부처간 이견이 없는 경우임을 소명할 것
- ③ 국가 질서유지, 국민의 생명·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
  - ※ 생명·안전 관련 규제의 경우, 주요 선진국 기준 및 규제의 필요성·적절성(타 규제와 중복 여부, 대안 여부 등) 등을 입증할 것
- ④ 금융·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, 환경 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
- ⑤ 1년 이하의 효력상실형 일몰이 설정된 규제

- ⑥ 통상적인 임금 및 물가상승에 상응해 기존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규제
- ⑦ 규제의 미이행·미준수로 인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
  - 단, 의무부과·금지규정이 강화되어 규제가 확대·강화된 경우 비용관리제 적용
- ⑧ 1항 내지 7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용전문위원회에서 비용관리제 적용제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

## 2) 운용방법

### ●●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절차 요약 ●●

비용관리제 적용대상		적용비대상	
비용분석 가능		비용분석 불가	
① 비용 100억원 미만	② 비용 100억원 이상	③ 심사처리제	④ 간편심사제
규제비용분석서 작성 ↓ 규제연구센터(KDI) 검증	규제비용분석서 작성 ↓ 규제연구센터(KDI) 검증 ↓ 비용전문위원회 심의	유사규제 선정(부처자체) ↓ 비용전문위원회 심의	규제비용분석서 작성 ↓ 규제조정실 검토 ↓ 비용전문위원회 심의
↓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/본심사			

#### ❖ 규제비용분석

- 규제비용 및 편익을 화폐 단위(금액)로 산출하여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용
- (심사처리제) 다만, 규제비용 분석이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성질·강도·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규제지수를 활용하여 분석
  - 화폐단위의 규제비용·편익 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제
  - 규제기준 및 규제범위 설정이 매우 어렵고, 관련 통계 등이 전무하여 비용분석 추계(시물레이션)조차 불가능한 규제

### ❖ 규제비용분석의 적정성 심의

- 일정규모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을 받아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의 비용전문위원회에서 심의
  - ※ 규제검증은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전에 규제연구센터에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·제출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규제비용검증 실시
- (간편심사제) 규제에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의 범위가 적은 규제 등은 국무조정실이 검토(규제연구센터의 검증 생략)하여 비용전문위원회에 상정·심의
  - 규제의 직접비용이 낮은 규제
    - \* 예시 : 매년 기업에 초래하는 비용이 10억 미만, 자격기준·요건 등 관련 규제로서 직접비용이 크지 않은 규제 등
  - 기존 규제의 폐지·완화로 인해 보완 또는 수반되거나\*,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수되는 절차 관련 규제\*\*
    - \* (예시)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여 보세구역내 석유제품 혼합제조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기존 석유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
    - \*\* (예시) 직불금 등 농업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면서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관련 서류(확인서)를 제출토록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
  - 비용분석 불가규제로서 규개위(비용전문위)의 심사처리제를 통해 처리하는 경미한 규제

## 마. 지원기구

- ❖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에 「농식품 정책 성과관리센터」를 설치(2015.7)하여 농식품부의 정책 개발 및 입법초기 단계부터 정책의 품질(규제비용 고려 등)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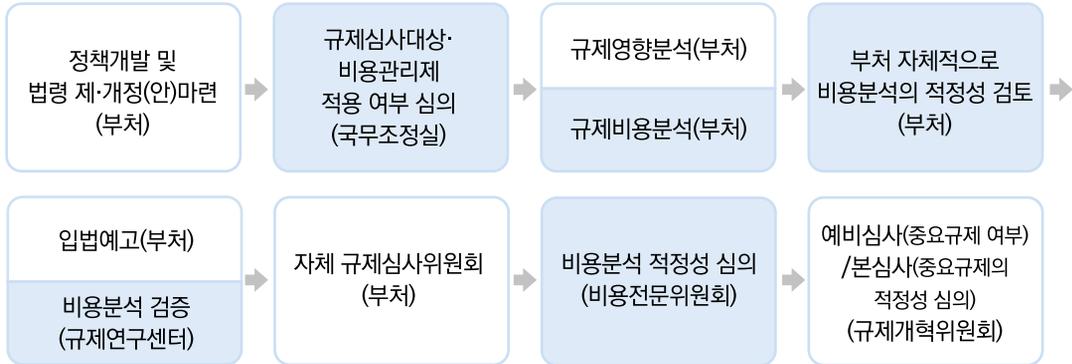
● ● 농식품정책 성과관리센터 업무수행 네트워크 ● ●



- ❖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작성한 규제비용분석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“규제개혁위원회” 산하에 “비용전문위원회” 설치·운영(‘14.8)
  - (규제사전심사) 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규제의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여부, 비용분석 가능여부, 간편심사(저비용 규제) 해당여부 등 심의 결정
  - (규제비용심의)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대상 규제에 대해 부처가 작성한 규제비용분석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심의·결정
- ❖ “비용전문위원회”의 비용 검증 지원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(KDI) 및 한국행정연구원(KIPA)에 규제연구센터 설치·운영(‘14.6)
  - KDI는 경제부처, KIPA는 행정사회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
  - 다만, 비용이 적은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(저비용 규제) 분석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(규제조정실)에서 검토하여 비용전문위원회에 안건 상정

## 바. 세부 운영절차

### ● ● 규제심사 절차 요약 (규제비용관리제 포함) ● ●



\* 음영은 규제비용관리제 관련 절차

### 1) 정책개발 및 법령 제·개정(안) 마련(농식품부)

-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정책개발 및 법령 제·개정 구상단계부터 규제비용을 고려하여 대안 검토
  - 정책개발 및 법령 입안을 위한 연구용역시 규제비용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\* 확보를 병행하여 대안 검토시 활용
    - \* 피규제자의 범위, 규제비용 및 편익항목의 구체화, 규제항목별 단가, 규제의 신설·강화/폐지·완화 등에 따른 피규제자의 수(數) 변화 전망 등
- 규제의 신설·강화 등으로 규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,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폐지·완화 규제 발굴 (필요시 타 부서와 협의)
  - 특히, 규제의 신설·강화로 영향을 받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, 다른 법령의 규정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
- 규제의 신설·강화 또는 폐지·완화가 포함된 법령(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행정규칙 등)의 정비가 포함되는 정책의 기본방침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, 법령 제·개정안 마련시에는 사전에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과 협의
  -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실·국이 마련한 정책에 규제비용 분석 및 대안검토 여부 검토
  - 필요시 자문실시(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규제영향평가팀 등 활용) 및 법령정비협의회에 상정하여 적정성 논의

## 2) 규제심사대상 및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여부 심의(국무조정실)

- 규제심사대상 및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(1안건 1파일)
  - 자료제출시 기본방침서 및 참고자료 첨부
- 국무조정실(규제조정실)은 규제심사대상(신설·강화) 여부를 확인
  - \* 신설·강화 규제 없음으로 판단된 법령은 법제처 심사단계로 진행(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첨부)
- 규제개혁위원회(비용전문위)는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여부 및 비용분석 유형(간편심사제, 심사처리제 등) 등을 심의하여 결정
- 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 대상 및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부처에 통보

## 3) 규제비용 분석서 작성(농식품부, KREI 협조)

- 업무담당부서는 비용전문위원회의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대상으로 심의된 규제에 대해서는 비용 분석 유형(간편심사제, 심사처리제 등)을 고려하여 규제비용분석서 작성
  - ※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을 위한 비용분석서 작성과 함께 “규제영향분석서”도 작성하여야 하며,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제외 규제는 “규제영향분석서” 작성
- 폐지·완화 규제는 자율적으로 과제 발굴하여 규제비용분석서 작성
- 규제비용분석서는 규제연구센터의 규제비용검증 중점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III·IV장의 규제 비용산정 기준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

### ● ● 규제연구센터의 규제비용검증 중점 검토사항 ● ●

- 비용 부담 대상자 및 항목을 정확히 식별했는가?
-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산정했는가?
- 신뢰성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사용했는가?
- 공식적인 통계 미비시 분석에 대한 가정 및 추정치 제시가 합리적인가?
- 할인율을 고려, 현재가치로 비용과 편익을 제시했는가?
- 분석에 대한 근거 및 데이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가?
-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피규제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?
- 신설·강화 규제와 폐지·완화 규제와의 비용교환에 따른 적립분이 정확히 산정되었는가?

-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KREI는 업무담당부서의 규제비용 산정 업무 지원을 위해 자문 실시

#### 4) 규제비용분석 적정성에 대한 우리부 자체 검토(농식품부)

-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업무담당부서가 제출한 규제비용분석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
  - 필요시 농식품 규제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제비용 검증 실시

#### 5) 부처가 작성한 규제비용분석서 검증(규제연구센터)

- 국무조정실은 부처가 제출한 규제비용분석서를 규제연구센터(우리부 소관업무의 경우 KD)가 검증하도록 하고, 검증결과를 부처에 전달
- 간편심사 적용대상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연구센터의 사전 검증을 생략하고, 국무조정실이 직접 검토하여 의견을 부처에 통보
- 농식품부 업무담당자는 규제연구센터의 검증보고서 또는 국무조정실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규제비용분석서를 보완
- 보완된 규제비용분석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거쳐 국무조정실에 제출

#### 6) 규제비용분석의 적정성 심의(규제개혁위원회의 비용전문위)

- 국무조정실은 부처가 제출한 규제비용분석서를 비용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
  - 비용분석·검증의 적정성 여부, 복수의 대안 검토 여부, 규제의 폐지·완화로 인한 부작용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·심의
  - 비용분석·검증의 적정성 및 규제비용 교환에 따른 적립분(banking)에 대해 최종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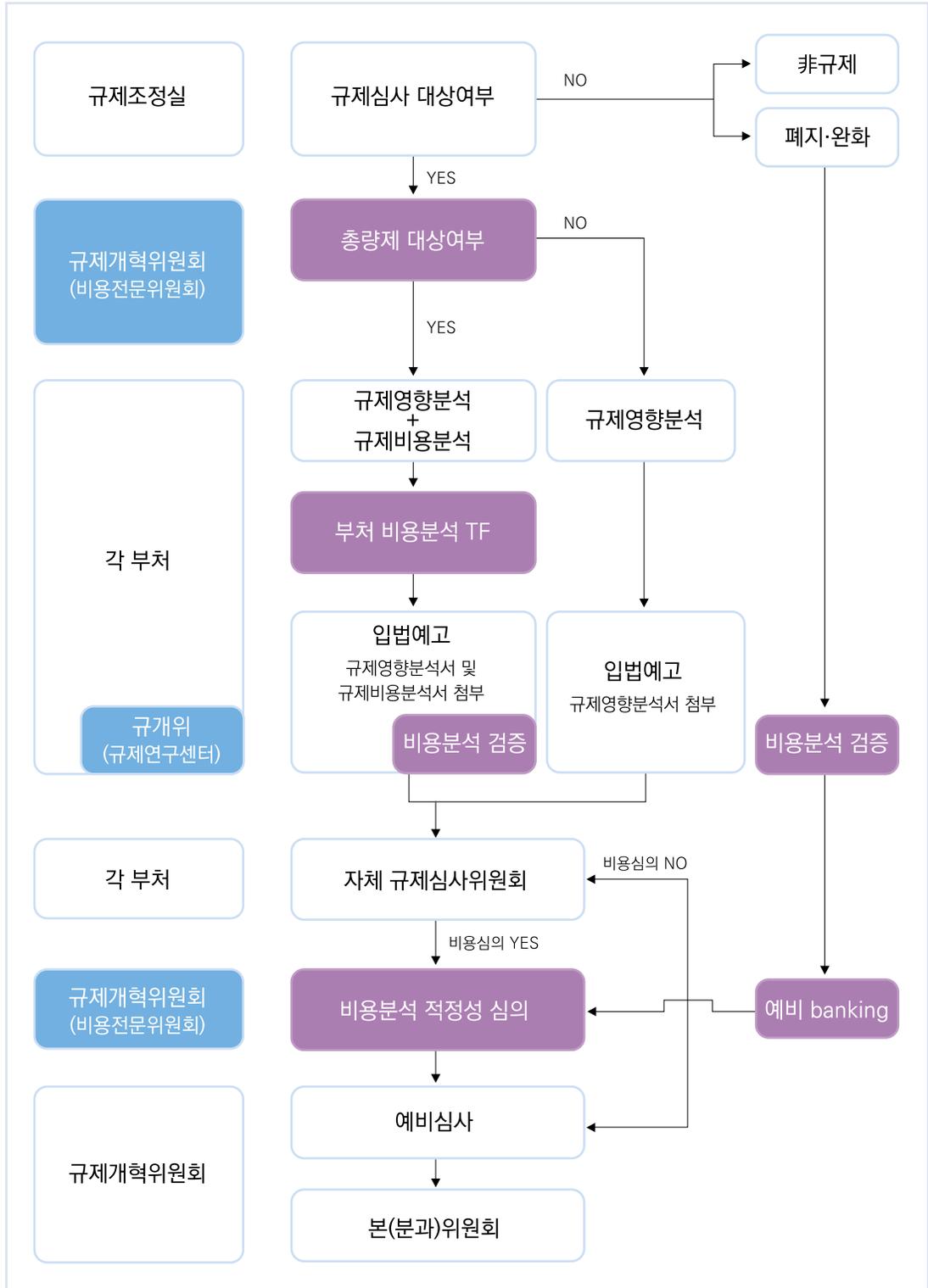
#### 7) 규제심사(규제개혁위원회)

- 비용전문위원회의 규제비용 심의결과를 제출받아 심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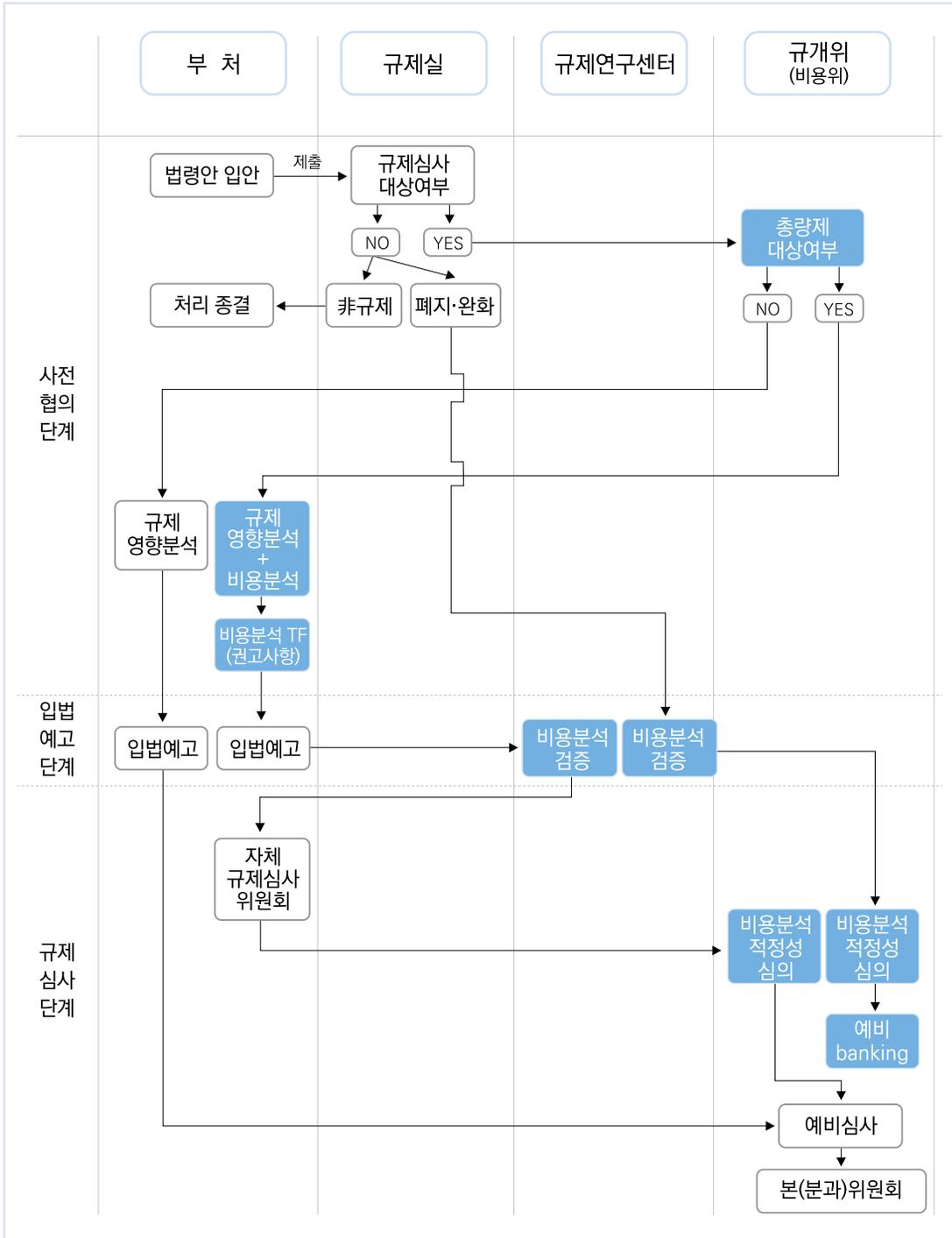
#### 8) 규제비용의 정산 및 공개(국무조정실)

- 신설·강화 규제와 폐지·완화 규제의 교환에 따른 비용적립분(저축 또는 부채)은 규제 등록서를 기점으로 정산·관리
- 규제비용은 규제정보포털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

| 참고 |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절차도(1)



참고 |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절차도(2)



## | 참고 | 규제비용 분석 기준

### ❖ 규제심사 대상 판정시 간이형과 표준형 구분

구분	기준
간이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</li> <li>-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</li> <li>- 의무제출 서류내용의 구체화</li> <li>-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관련 규제</li> <li>- 계량적인 비용·편익이 불가능한 사항</li> </ul>
표준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간이형을 제외한 모든 규제</li> </ul>

### ❖ 비용과 편익의 구분

구분	범 위
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</li> <li>(행정부담)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문서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</li> <li>(노동)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</li> <li>(교육훈련) 교육 훈련비용 및 교육참여로 인한 기회비용</li> <li>(외부서비스) 전문가 자문비용, 시스템 위탁비용 등 외부기관에 지출된 비용</li> <li>(설비) 기계장비 등의 기자재 구입비용</li> <li>(원재료) 규제로 인해 사용된 각종 투입재 비용</li> <li>(운영) 규제로 인해 투입한 인력이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 각종 용품 및 관리운영 비용 (전기요금, 교통비, 보험료 등)</li> <li>(지연비용) 규제이행에 따른 사업운영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 이익 감소분</li> <li>(기타) 그 밖에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규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등</li> </ul>
편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편익</li> <li>(비용절감) 피규제자가 지불했던 비용 혹은 부담의 절감으로 발생하는 편익(예: 부담금 감액, 시설·설비 요건 완화)</li> <li>(보조금 등) 정부보조금 등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금전적 이익</li> <li>(기타 영업이익) 변경된 규제의 시행 자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피규제자에게 추가 발생하는 영업이익, 기업의 이윤 등</li> </ul>



CHAPTER 06

| 제6장 |  
규제등록제도

- 
1. 규제등록제도의 개요
  2. 규제등록 절차
  3. 법령 유형별 규제등록대상 검토 절차
  4. 규제등록 관련 Q&A



# 1

## 규제등록제도의 개요

❖ 규제의 파악 및 관리, 규제내용 및 변경사항의 공개를 통한 국민의 감시 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\* 시행과 함께 도입·시행

● (법적근거)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

행정규제기본법 제6조(규제의 등록 및 공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·내용·근거·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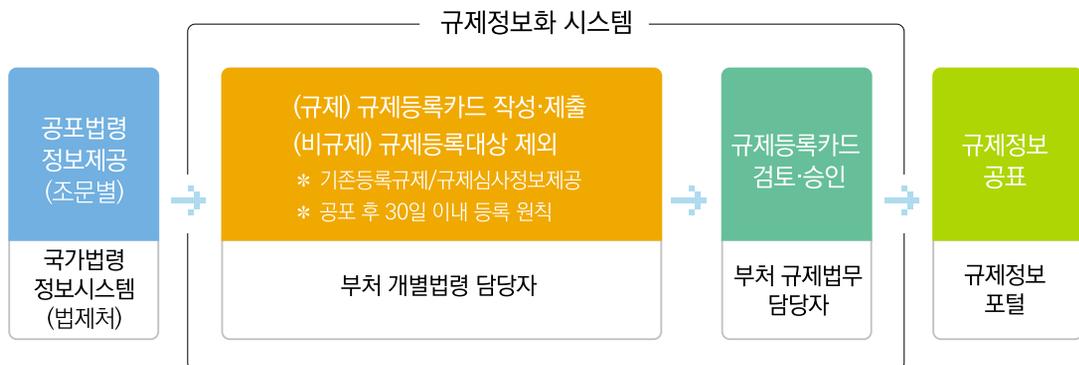
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4조(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※ 개인 기업 등 수요자에게 전체적인 규제체계나 프로세스 등 규제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, 규제의 총량관리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의 방향제시 등 규제의 질적 관리를 위한 수단 제공이 목적

❖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

● (등록체계)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, 부처책임자 자율 등록 중

### ●● 규제등록 및 공표 절차 ●●



\* 규제 해당 여부는 '행정규제 판단기준'에 따라 부처가 자체적으로 판단

\* 등록 규제는 규제정보포털(www.better.go.kr)을 통해 상시 공개

- (등록단위) 규제조문(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·행정규칙)
  - \* 15년 등록제도 전면개편에 따라, 규제사무에서 규제조문으로 등록단위 변경
- (등록내용) 규제등록카드 양식에 따라 상하위 연계법령, 규제사무명, 규제요지\*, 일몰정보\*\*, 주요 검색어, 공포·시행일 등을 입력
  - \* 일반 국민이 해당 규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
  - \*\* 법령 등에서 '규제의 재검토' 조문으로 재검토 기한이 설정된 경우 작성

## 2 규제등록 절차(규제정보화시스템)

### ① 수신된 제·개정 법령정보 확인

☞ [규제정보화시스템 > 규제등록관리 > 규제등록]

-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심사를 받은 조문제목과 최종 개정된 조문제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'심사받은 규제등록'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
- 그 외 나머지 조문은 '그 외 규제등록'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(심사를 받았으나 조문제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포함)

### ② 법령이 전부개정된 경우에는 먼저 '전부개정 법령' 카테고리에서 기존 규제조문을 새로운 규제 조문으로 변경하여야 함

- <예시> 기존 규제조문인 3조의2가 전부개정으로 현행 4조로 바뀐 경우 이를 반영

### ③ 해당 제·개정과 관련한 규제심사 내용(시스템에서 ☐로 표시)을 확인하여 '심사받은 규제등록' 카테고리에 있는 조문을 먼저 수정 또는 신규 등록

- '작성대기'를 클릭하면 규제등록카드가 나오며, 상하위 법령의 연계, 규제사무명, 규제요지, 일몰정보, 주요검색어 등을 작성

### ④ '그 외 규제등록'에 있는 제·개정 조문 중 현재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조문인 경우(시스템에서 ☐로 표시) 등록된 내용과 현행 조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 등록

### ⑤ 나머지 '그 외 규제등록'에 있는 제·개정 조문 가운데, 해당 제·개정 관련 규제심사 정보를 확인하여 △규제심사(중요/비중요)를 받았으나 '심사받은 규제등록'에 매칭이 누락된 경우, △'규제 완화'임을 이유로 규제심사 비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신규로 등록

- ☞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 [규제정보화시스템 > 부처자체심사 > 심사대상여부확인 > 규제심사대상현황]
- ☞ 규제심사 결과 확인 [규제정보화시스템 > 부처자체심사 > 안전관리 > 안전처리현황]

⑥ 그 외 남은 조문은 규제여부를 개별 검토하여, 규제로 판단될 경우 신규로 등록

- 법률의 경우, 규제심사를 받지 않고 의원입법을 통해 신규 규제 조문 제·개정이 가능하므로, 담당자들이 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직접 등록해야 함

⑦ 규제가 아닌 조문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제외 처리

- 행정내부사항이거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
-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(벌칙, 과징금, 과태료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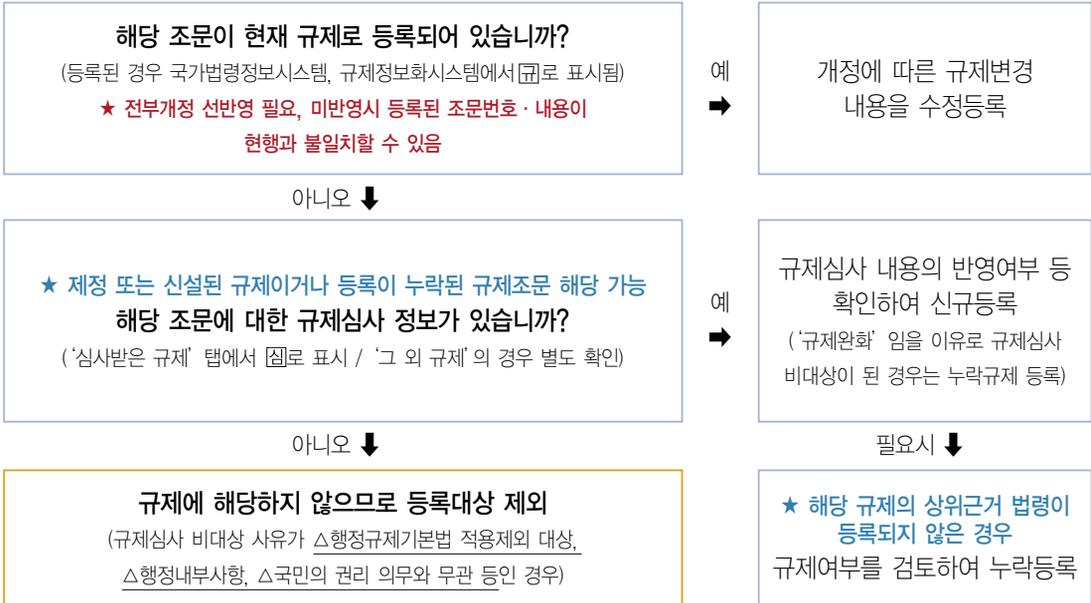
### 3 법령 유형별 규제등록대상 검토 절차

① 법률



## ②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, 행정규칙)

\* 반드시 규제심사를 거치는 경우



## | 참고 | 규제의 변경·폐지

### 1. 규제의 변경·폐지의 원인

#### 가. 규제목적의 달성 또는 문제의 소멸

- ❖ 규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경제·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가 해소된 경우 관련 규제는 폐지·변경됨

#### 나. 규제환경의 변화

- ❖ 규제는 특정시대의 경제·사회적 배경하에 생성된 것으로 경제·사회적 환경이 변화되면 규제도 변경되거나 폐지
  - 시장 및 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라 정부개입의 필요성 저하
  - 최근 급격한 기술변화, 정보화, 금융분야의 발전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제의 타당성이 약화
- ☞ 규제는 시대적, 경제·사회적 환경의 산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나,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·경제적 비용 유발 등 부작용 발생

## 2. 규제의 변경·폐지 필요성

### 가. 필요성

- ❖ 기준과 절차가 비현실적인 규제는 법과 현실간의 괴리 현상을 확대하여 규제준수율을 낮춤으로 정부 규제에 대한 불신 유발
- ❖ 기존의 기술과 산업형태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신기술, 새로운 산업분야의 도입·발전에 걸림돌로 작용
- ❖ 환경·복지·안전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분야의 규제의 강화 또는 합리화 요구 반영
  - ☞ 규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로 인한 기득권의 존재, 소관 부처의 규제권한 유지 노력 등으로 개편·폐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규제를 환경변화에 맞게 개편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으로서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

## 3. 규제의 변경 및 폐지의 기준

### 가. 규제 존속기한의 설정

- ❖ 급변하는 경제·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
  - ※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계속 존속해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음(행정규제기본법 제8조)
- ❖ 이는 현행 규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주기화하여 규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

### 나. 규제의 타당성

- ❖ 기본원칙
  -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타당성 등 검토
  - 「원칙금지 예외적허용」(Positive List) 방식의 규제는 가급적 「원칙허용 예외적금지」(Negative List) 방식으로 개선

- 기대효과와 편익에 비해 순응비용 및 부작용이 큰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,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해결을 유도
-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거나, 내용이 중복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규제를 체계적으로 일원화
- 지식정보화, 전자정부화, 기술발전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규제의 폐지 또는 합리화
- 국제관례나 국제기구와의 협약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은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
- 선진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, 준수율이 낮은 비현실적 규제는 폐지 또는 합리화

#### ❖ 규제영향분석

-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
- 규제 문제의 정의, 규제목표의 적정성, 비용과 편익의 분석 등을 통해 규제의 존치 여부 또는 대안의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존속기한 연장시에도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음
- ☞ 규제의 변경·폐지과정은 규제의 피드백의 과정으로 규제의 타당성 및 규제대안 검토 등 규제의 형성·입안 등 규제절차와 과정과 동일한 절차와 검토를 거치며 변경 이후에도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함

### 1. 규제등록은 규제심사를 받은 규제만을 등록하는 것인가요?

- ❖ 규제등록은 규제심사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조문이 규제인 경우 이를 등록하는 것
- ❖ 규제심사의 과정에서 규제 해당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, 규제정보화시스템에서는 규제 심사를 받은 경우(심사받은규제)와 그렇지 않은 경우(그 외 규제)로 구분하여 개정법령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  - \* 심사받은 조문 제목과 최종 제·개정된 조문 제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, '심사받은 규제등록' 탭에서 확인되도록 함
    - 일부 기술적 사유로 누락 가능성이 있으며, 그 경우 심사를 받았지만 '그 외 규제등록' 탭에서 확인될 수 있음
- ❖ 다만, △규제심사 비대상인 경우에도 규제에 해당\*할 수 있으며, △의원입법을 통해 규제심사 없이 법률로써 규제가 신설될 수 있고, △상기 기술적 사유 등으로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부처의 법령 등이 제·개정된 경우에는 '심사받은 규제등록' 과 '그 외 규제등록' 을 모두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함
  - \* 규제심사 시 '규제완화에 해당함' 을 이유로 규제심사 비대상이 되는 경우 등

### 2. 의원입법으로 법률이 제·개정된 경우, 규제심사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규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?

- ❖ 규제심사를 받지 않은 의원입법 제·개정 법률의 경우에는 '행정규제 판단기준'에 따라 규제 여부를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등록할 수 있음

#### ◆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(행정규제의 범위 등)

1. 허가·인가·특허·면허·승인·지정·인정·시험·검사·검정·확인·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
2. 허가취소·영업정지·등록말소·시정명령·확인·조사·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
3. 고용의무·신고의무·등록의무·보고의무·공급의무·출자금지·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
4.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(사실행위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
  - ☞ 조문제목에 “허가”, “취소”, “기준/요건”, “보고/신고”, “금지” 등 단어가 사용된 경우 통상 규제료 판단 가능

- ❖ 상기 과정에서 규제로 등록하지 않았으나, 관련된 하위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시 상위법률 근거로 인정되는 조문인 경우에는 규제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누락 규제로 등록할 수 있음

### 3. 같은 조문이 등록대상으로 여러 건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?

- ❖ 같은 조문에 대한 규제심사 정보가 여러 건인 경우\* 중복 매칭되어 나타나는 경우 발생
  - \* 가까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된 경우 등
- ❖ 개정 시점이 다른 경우, 연혁 관리를 위해 가급적 순서대로 수정 등록을 해야함. 다만, 규제의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 사소한 개정의 경우, 가장 최근의 개정을 등록하면, 이전목록은 사라짐

◆ 예시 : ○○○ 행정규칙 ○○조(허가취소 등) “~ 취소기준은 별표와 같다”

- \* 공포일이 각각 3월(일부개정), 7월(일부개정), 12월(타법개정) 3건이고, 각각 별표(등록대상은 별표가 아니고 해당조문)만 개정된 경우
  - 규제등록카드에 별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, 내용에 변동이 없으므로, 가장 최근인 12월 개정 건만 수정등록(갱신)

### 4. 규제등록된 조문제목과 내용이 현재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?

- ❖ 전부개정을 통해 조문번호 등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규제등록된 조문제목과 내용이 현재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- ❖ 전부개정 법령은 ‘전부개정법령’ 탭에서 개정 전 법령정보와 현재의 법령정보를 비교하여 기존 규제등록된 규제조문을 현재의 규제조문으로 일괄변경(기존 규제등록된 조문의 변경만 가능) 후, 나머지 조문들을 현재 기준으로 등록(심사받은규제등록, 그 외 규제 등록)해야 함

## 5.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조문과 등록하지 않아야 하는 조문이 있나요?

- ❖ 제·개정 과정에서 '규제의 재검토'라는 제목으로 재검토행 일몰 대상이 된 조문은 반드시 규제등록을 해야 함

◆ 예시 : ○○법 시행령 40조(규제의 재검토)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5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기준 : 2017년 1월 1일

2. 10조에 따른 등록시 제출서류 : 2018년 1월 1일

3. 20조에 따른 실무수습기간 : 2019년 1월 1일

→ 40조가 아닌 5조, 10조, 20조가 규제등록대상이며, 일몰정보와 함께 등록

→ 모든 규제가 일몰대상은 아니므로 그 외 조문에도 규제 존재 가능

- ❖ 벌칙·과태료·과징금 조문 등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제외대상은 규제로 등록하지 않음

◆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(적용범위)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

2. 형사(刑事), 행형(行刑)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

2의2. 과징금,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
3. 「국가정보원법」에 따른 정보·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

4. 「병역법」, 「통합방위법」, 「예비군법」, 「민방위기본법」,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규정된 징집·소집·동원·훈련에 관한 사항

5. 군사시설,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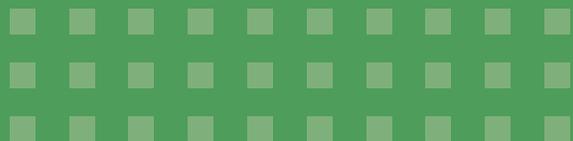
6. 조세(租稅)의 종목·세율·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
CHAPTER 07

| 제7장 |

## 우리부 규제혁신 사례

- 
1. 우리부 규제혁신 사례
  2. 타부처 발표 사례



## 1. 2022년 기존규제 정비계획(17건)

## ●● (신산업) 농식품 분야 신산업 개발·스마트 규제혁신 ●●

연번	과제명	정비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1	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	<b>기존</b>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공유재산법상 지자체 소유부지로 장기임대 및 수의계약이 불가하여 혁신밸리내 기존 농가의 온실 신축 등 곤란  <b>개선</b>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장기임대 및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특례 제도 마련	스마트농업 육성법 제정	'23.6월
2	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도입	<b>기존</b> 축산물 경매는 전국 도매시장(14개소)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가능  <b>개선</b>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,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는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경매 허용	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및 도입	'22.12월
3	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조성	<b>기존</b> 농공단지내 교통·안전시설, 재난·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 미흡  <b>개선</b> 농공단지에 스마트 교통·안전 인프라구축,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조성	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	'22.12월

## ●● (신산업)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개선 ●●

연번	과제명	정비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4	동물용의약품 범위 확대	<b>기존</b> 동물용의약품에 식이섬유 및 동물용 외용 살포제는 사용 불가  <b>개선</b> 식이섬유 및 동물용 외용살포제 사용을 허용하여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 기여	동물용의약품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	'22.12월

연번	과제명	정비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5	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	<p><b>기존</b> 반려동물 행동지도·훈련 등에 관한 자격은 민간에서 부여하며 제각기 운영되어 공신력 부족</p> <p><b>개선</b> 반려동물 훈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</p>	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	'22.12월
6	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도 도입	<p><b>기존</b> 동물병원은 진료비 고지의무가 없어 진료비 과다·과잉진료 등 국민 불편 지속</p> <p><b>개선</b> 동물병원 개설자가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제도 도입</p>	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	'22.12월
7	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수의법의검사 세부기준 마련	<p><b>기존</b> 반려동물 학대 의심건에 대한 수의법의 검사*의 법적 근거 부재 * 동물보호법 위반의심 등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(사망의 원인, 학대 의심 등) 등을 밝히는 검사</p> <p><b>개선</b> 동물 학대, 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(수의법 의검사) 관련 법적 세부기준 마련</p>	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	'22.8월

●● (기업부담) 농식품 분야 기업불편 해소 ●●

연번	과제명	정비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8	세척농산물 처리시설 지정기준 완화	<p><b>기존</b> 세척농산물 처리시설의 내벽과 천장에 돌출 부위(H빔, 배관 등)가 없도록 규정</p> <p><b>개선</b> 위생적으로 세척·포장 후 껍질 제거후 먹는 과일류는 내벽과 천장의 돌출부위 허용(단,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농산물은 제외)</p>	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	'22.12월
9	국제종자 검정협회의 국제인증실험실 인증범위 확대	<p><b>기존</b> 국제종자검정협회(STA)의 국제인증실험실로 인증받은 후 그 자격유지를 위해 검정시험 응시가 필수이나 검정능력 시험용 종자는 국립종자원만 수입 가능</p> <p><b>개선</b> 국제인증실험실로 인증받은 민간 종자 회사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용 종자 수입 허용</p>	국제종자검정협회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검역요령 관련 고시 개정	'22.10월

연번	과제명	정비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10	간척지 활용 사업 용도에 임산물 추가	<b>기존</b> 농·축·수산물의 생산·가공·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 활용 사업 범위 제한 <b>개선</b> 간척지활용 사업 범위에 임산물도 추가	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	'22.7월

●● (국민불편) 농식품 분야 국민불편 개선 ●●

연번	과제명	정비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11	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및 대출 한도 확대	<b>기존</b>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이 내·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로 한정적이고 선금 대출 한도가 4천만원(신축 등)으로 낮은 수준 <b>개선</b> 내·외국인 근로자 채용예정인 경우도 사업 신청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및 대출 한도를 6천만원으로 확대	농촌주택개량 사업 시행지침 개정	'22.2월
12	농지연금 가입대상자 확대	<b>기존</b>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 <b>개선</b>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로 완화	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시행령 개정	'22.2월
13	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대상 확대	<b>기존</b> 농번기 돌봄방은 만2세~초등 2학년만 이용 가능 <b>개선</b> 돌봄방 이용대상인 만2세~초등 2학년과 형제자매인 경우 초등 6학년까지 보육대상 포함* * 단, 초등 3학년~6학년은 예산 미지원	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계획 수립	'22.3월
14	농업인 안전보험금 수급 전용계좌 도입	<b>기존</b> 농업인 안전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일반 계좌로 입금되면 압류 금지 효력이 없어 수급권 보호 곤란 <b>개선</b>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압류 금지 근거 마련	농어업인안전 보험법 시행령 개정	'22.6월
15	농신보 재해 특례보증한도 상향	<b>기존</b> 농어업 재해 복구 등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한도를 3억원 이내로 제한 <b>개선</b> 특례보증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	농신보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업무 방법서 개정	'22.6월

연번	과제명	정비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16	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	<p><b>기존</b>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식물 검역 관련 대면교육 과정 이수 요구</p> <p><b>개선</b>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교육시스템 구축 및 규정 정비</p>	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고시 개정	'22.5월
17	농업ON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	<p><b>기존</b>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정보, 영농일지·회계장부 작성 등 농업경영을 위한 직접적 의사소통·정보채널 부재</p> <p><b>개선</b> 농업인이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, 지자체 공무원과 직접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농업 ON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</p>	농업ON 모바일 서비스 구축	'22.6월

## 2. 2021년 규제개선 추진 실적(완료 과제)

연번	과제명	정비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1	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조건 변경	<p><b>기존</b> 외국인투자기업만 '글로벌식품존' 부지에 입주 가능</p> <p><b>개선</b> 국내기업도 해당 부지에 입주 가능토록 입주조건 변경</p>	국가식품 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 변경, 분양공고 등	완료 ('21.7월, 9월 개정 공고)
2	돌봄·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확대	<p><b>기존</b> 농촌의 취약한 돌봄·교육·고용 등 사회 서비스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나, 추가 개선 필요</p> <p><b>개선</b>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·교육·고용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확대</p>	사업계획 마련 (사회적농장 선정, 육성), 사회적 농장 확대	완료 ('21.2월 개소 확대)
3	농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 범위 확대	<p><b>기존</b> 산재·어선원보험 가입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더라도(겸업) 현행 법령상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이 제한</p> <p><b>개선</b> 산재·어선원보험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농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</p>	농업인 안전보험법 개정	완료 ('21.6.15 개정 법률 시행)

연번	과제명	정비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4	간척지 조성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용도 확대	<p><b>기존</b> 간척지 임시사용은 단년생 작물 경작, 농업 기술 관련 시험·연구용 경작, 향토문화 축제에 한하여 가능</p> <p><b>개선</b> 간척지 임시사용 용도에 '문화관광 관련 조형물, 산책로, 간이 휴게시설 등'을 추가하여 임시사용 범위를 확대</p>	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	완료 (‘21.10.14. 개정령 시행)
5	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급대상 확대	<p><b>기존</b> 청년창업농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도 영농정착지원금은 한 사람(세대)에게 지급</p> <p><b>개선</b>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끼리 결혼할 경우, 부부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각각에 모두 지급하도록 지급대상 확대</p>	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	완료 (‘21.1월 개정 지침 시행)
6	재난 발생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규정 신설	<p><b>기존</b>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며, 태풍·질병 등의 긴급 재난 발생시 임대료 감면 규정은 미비</p> <p><b>개선</b> 태풍·질병(코로나19) 등 재난 발생시에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로 농업인 경영안정에 기여</p>	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	완료 (‘21.4.26. 입법예고 완료)
7	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확대	<p><b>기존</b> 기존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은 '농어촌 지역 노후·불량주택 개량희망자, 농어촌 지역 무주택자, 도시지역에서 귀농귀촌한 사람'으로 한정</p> <p><b>개선</b> 주택의 신축·개량을 통해 내·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확대</p>	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	완료 (‘21.2월 개정 지침 시행)
8	유기농업 지원사업 대상 확대	<p><b>기존</b>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유기농업 자재* 지원사업의 대상은 친환경농가에 한정 * 유기농·수산물을 생산, 가공,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은 재료로 만든 제품</p> <p><b>개선</b> 사업지원대상을 일반농가까지 확대</p>	친환경농어업법 개정	완료 (‘21.10.14. 개정 법률 시행)

연번	과제명	정비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9	농어촌민박 교육 운영 주체 확대	<p><b>기존</b> 기존 농어촌민박 교육운영 주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한정</p> <p><b>개선</b> 교육운영 주체에 '농어촌민박 사업자단체'를 추가하여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 제고</p>	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	완료 (21.4.13. 개정 규칙 시행)
10	농업재해에 '황사' 추가	<p><b>기존</b> 현행법상 농업재해에는 가뭄, 홍수, 호우, 해일, 태풍 등이 규정</p> <p><b>개선</b> 일조량 부족과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'황사'도 농업 재해에 포함</p>	농어업재해 대책법 개정	완료 (21.4.13. 개정 법률 시행)
11	질병관리 등급제 도입	<p><b>기존</b> AI 발생 농가 3km 이내 가금은 모두 살처분</p> <p><b>개선</b> 질병관리 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살처분 제외</p>	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· 시행규칙 개정	완료 (21.10.5 개정령 시행)
12	전자식물검역 증명서(ePhyto) 운용 개시	<p><b>기존</b> 농산물 수출시 수출자는 정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에 제출</p> <p><b>개선</b> 가입국간(184개국) 전자식물검역 증명서 교환시스템을 통해 전자 식물검역증명서 인정</p>	수출식물의 검역요령(고시) 개정	완료 (21.3.26 개정 고시 시행)
13	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	<p><b>기존</b> 축산물 도매시장은 대면방식으로 경매 진행</p> <p><b>개선</b>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, 등급판정 등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경매하는 시스템 구축</p>	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	완료 (21.12월~ 시범운영중)
14	화훼류 온라인 거래 시범사업 추진	<p><b>기존</b> 중도매인과 농가는 오프라인 (전화)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주문하는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</p> <p><b>개선</b> 정가수의매매 방식을 온라인화하여 화훼류 온라인거래(정가수의매매) 시스템 구축</p>	화훼류 온라인거래 시스템 구축	완료 (21.3월~ 시범사업 추진중)
15	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제도 신설	<p><b>기존</b>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노인을 위한 의료용품, 주거설비용품, 일상생활 용품,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</p> <p><b>개선</b>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식품까지 확대하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도입</p>	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(고시) 제정	완료 (21.5.31. 개정 고시 시행)

연번	과제명	정비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16	간척지염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	<p><b>기존</b> 태양광 발전에 이용되는 간척지염해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명시</p> <p><b>개선</b> 간척지염해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23년으로 연장</p>	농지법 시행령 개정	완료 (’21.10.14. 개정령 시행)
17	난각표시 및 계란이력번호 표시 일원화	<p><b>기존</b> 난각표시와 별도로 계란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포장지에 표시</p> <p><b>개선</b> 난각표시 정보를 계란이력시스템에 등록</p>	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	완료 (’21.8.23. 입법예고 완료)
18	MyAgridata 구축으로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	<p><b>기존</b> 직불금 신청 시 농업인이 자격증명 및 소명 자료 별도 제출</p> <p><b>개선</b> MyAgridata를 활용한 제출자료 생략 등 증빙서류 간소화</p>	MyAgridata 구축	완료 (’21.12월 시스템 구축)
19	감자 보급종 규격 기준 완화	<p><b>기존</b> 감자 보급종 규격(중량)을 50~270g으로 제한</p> <p><b>개선</b> 규격외품 감자도 씨감자로 유통 가능토록 감자 보급종 규격기준을 완화(50~270g → 30~330)</p>	종자관리요강 (고시) 개정	완료 (’21.4.13. 개정 고시 시행)
20	HACCP 인증 서류 간소화	<p><b>기존</b> HACCP 인증 신청 시 복잡한 내용의 안전 관리인증기준서 제출</p> <p><b>개선</b> 핵심 사항만 기재한 안전관리인증 운용 계획서를 제출토록 서류 간소화</p>	<p>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</p> <p>* 식약처 소관 법령으로 식약처와 협업 추진</p>	완료 (’21.1.25. 개정 규칙 시행)
21	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간소화	<p><b>기존</b>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제출 필요</p> <p><b>개선</b>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행정 정보공동이용(전산)을 통한 확인으로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</p>	<p>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</p> <p>* 식약처 소관 법령으로 식약처와 협업 추진</p>	완료 (’21.1.25. 개정 규칙 시행)
22	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확대	<p><b>기존</b> 농산물 거래는 도매시장 중심으로 유통 * 양파·사과·마늘 경매·입찰 전자거래 시범사업중 (’20.5~)</p> <p><b>개선</b> 농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산지에서 직배송</p>	농산물 도매거래 온라인 시스템 구축	완료 (’20년~ 시범사업 지속추진중)

연번	과제명	정비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23	공익직불금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	<p><b>기존</b>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시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, 영농활동증명 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방문 제출</p> <p><b>개선</b> 행안부·농협·농진청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영농활동정보 등을 농식품부(농식품 마이데이터)와 연계하여 정보를 직접 확인</p>	농식품부·농협· 농진청·행안부 시스템 연계	완료 (’21.12월 시스템 구축)
24	동물 보건사 제도 도입	<p><b>기존</b> 동물간호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*로, 민간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중 이나, 민간 부여 동물간호 자격자는 비진료 업무만 가능하여 질높은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에 한계</p> <p><b>개선</b>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질 높은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신설하여 국가 자격증 부여</p>	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	완료 (’21.9.8. 개정규칙 시행)
25	소 정액등처리업 허가 요건 완화	<p><b>기존</b> 민간, 지자체 등은 현행 축산법 규정의 ‘소 정액등처리업’ 허가기준*을 충족하기 어려움</p> <p><b>개선</b> 씨수수 보유 기준을 기존 5마리에서, ‘가축 개량총괄기관이 선정한 씨수수’로 완화</p>	축산법 시행령 개정	완료 (’22.6.14. 개정령 시행)
26	우수 축사전문 관리업체 지정	<p><b>기존</b> 축사 소독, 방제 등 민간에서 운영중인 위탁·대행업의 방역 및 서비스 미흡</p> <p><b>개선</b>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 지정 제도를 마련 하여 민간 관리 대행·컨설팅 등 서비스 업체 중 우수업소 발굴 및 지원</p>	축산법 개정 (관련규정 신설)	’23.6월 예정
27	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	<p><b>기존</b>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 으로 규정</p> <p><b>개선</b> 60대 가입률 증가추세* 등을 감안하여,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 으로 하향</p>	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	완료 (’21.12.8. 입법예고 완료)

연번	과제명	정비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28	곡물 수입검사 통관 절차 간소화	<p><b>기존</b> 곡물(밀, 대두, 옥수수 등) 수입시 보세구역 반입 이후 선박에서 검체 채취, 수입업체 공동 수입시 공동심사</p> <p><b>개선</b> 곡물 수입시 보세구역 반입 전 선박에서 검체 채취하도록 개선, 수입업체 공동 수입시 검사완료 개별 업체별 신고조치</p>	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(식약처 소관) 개정	완료 (’21.7.15. 개정 고시 시행)
29	동물용의약품 재심사를 위한 안전성·유효성에 관한 자료 조사	<p><b>기존</b> 인·허가 받은 신약 대상으로 시판 후, 재심사 시 필요한 축종별 조사대상 동물 수 과다</p> <p><b>개선</b> 축종별 조사대상 동물수를 기존 1,200두 → 360두로 축소 (재심사기간 6년 기준)</p>	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	완료 (’21.12.17. 개정 고시 시행)
30	동물용 의약품· 동물용의료기기 대상 재평가	<p><b>기존</b> 검역본부는 재평가 시안(중간점검 결과)를 피조사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20일간 공개</p> <p><b>개선</b> 관련 제조업체 등이 재평가 시안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연장</p>	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에 관한 규정 개정	완료 (’21.12.17. 개정 고시 시행)

## 1.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(중소벤처기업부, '22.6월 발표)

### 가. 기술개발·사업화 규제정비

#### 1) 전기자전거 최대 모터 정격출력 기준 완화(산업부)

##### 기업소리 전기자전거 안전을 위해서는 최고 속도만을 제한하면 되지 않나!!

➔ 전남소재 J사는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넓은 타이어를 사용하는 험지용 전기 자전거(팻바이크)를 개발코자 하나, 자전거의 기본중량이 무거워 현행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

- (현황) 전기자전거는 최고 속도를 한정(25km/h 미만)함에도 모터 정격출력\*을 350W 이하로 제한,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저해

\* 국외기준 : (일본) 비규제, (미국) 750W 이하, (캐나다) 500W 이하 등

- (개선) 각종 운행여건에 맞는 다양한 전기자전거를 개발·출시할 수 있도록 최대 모터 정격출력을 현행 350W → 500W로 상향\*

\* 다만, 최고속도 25km/h 유지를 조건으로 모터 정격출력 상향 조정 허용

#### 2) 중온 아스팔트 생산방식 다양화 추진(국토부)

##### 기업소리 중온 아스팔트면 되지, 환경에도 안 좋은 첨가제만을 써야 하나!!

➔ Z사는 외국과 같이 환경친화적 기술을 활용하여 중온 아스팔트를 생산코자 하나 국내는 첨가제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어 기술개발을 해야 하는지 의문

- (현황) 중온 아스팔트\* 생산방식으로 중온화 첨가제 투입방식만을 인정\*\*하여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생산기법\*\*\* 기술개발·활용 저해

- \*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환경유해물질이 적은 저에너지 소비형 도로 포장기술
  - \*\* 아스팔트 콘트리트 포장 시공지침상 첨가제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으며, 다만 이외 생산방식이라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발주청 선택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가능
  - \*\*\* 미국의 경우 기계장치에 의한 폼드(Plant foaming)방법이 약 87% 사용되고 있음
- (개선) 중온화 첨가제 투입이 아닌 새로운 중온 아스팔트\*(폼드아스팔트 등) 생산방식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및 지침화 검토·추진
    - \* 기계장치에 의한 폼드아스팔트도 특정기술이 아닌 보편적인 생산방식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원재료, 생산, 시공 과정 등의 품질관리 방안 등

### 3) 4륜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마련 검토 추진(산업부)

**기업소리** 네 바퀴로 가는 전기자전거를 만들고 싶은데 규제가 이를 막아!!

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O사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관광용 4륜 전기자전거를 개발·제작코자 하나, 안전기준이 없어 자전거도로 운행이 불가하고 무게가 전기자전거 범위를 초과한다는 지자체 의견에 사업 추진을 전면보류

- (현황) 4륜 전기자전거는 안전기준이 없고 자전거도로 운행이 불가\*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다양한 제품생산·판매에 애로\*\*
  - \* 국내는 전기자전거를 유럽·미국·일본 등과 달리 전체중량 30kg 미만으로 제한
  - \*\* 도심형 근거리 배송서비스를 위한 3륜 전기자전거 실증특례 진행중(경북김천, ~'23.8월)
- (개선) 3륜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마련 실증특례와 함께 4륜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병행추진

### 4) 외기유입형 공기청정기 기술규정 맞춤 마련(한국공기청정협회)

**기업소리** 공기청정기 실내용은 있는데 외기유입형은 기본기준도 없어!!

➔ A사는 바깥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는 외기청정기를 개발중이나, 단체표준 규격이 실내 청정기로 되어 있어 정확한 데이터 산출 및 기술사업화에 큰 애로

- (현황) 실내 공기청정기에 대한 단체표준\*과 기술규정·성능기준 등은 있으나 외기유입형 공기청정기\*\* 기술기준 미흡, 개발불편
  - \* 협회, 조합 등 단체가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발적으로 제정한 표준
  - \*\*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환기와 공기정화를 동시에 하는 외기유입형 청정기 시장수요 급증
- (개선) 외기유입형 공기청정기에 맞는 단체표준 제정, 운영 관리

## 5) 선불결제업 진입자본금 요건 완화(금융위)

### 기업소리 스타트업 기업은 현실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!!

➔ 스타트업 기업인 R사는 선불카드 발행·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주도 지역 내에서 한정·운영코자 하나 자본금 요건이 과도하여 사업화 포기상태

- (현황) 스타트업 기업이 선불카드 발행을 위해 선불결제업 등록을 희망하나, 자본금(20억원 이상) 충족이 곤란하여 사업화 애로
  - \*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&#12539;관리업(선불결제업)은 자본금(또는 출자총액) 20억원 이상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상환보증보험 필요
- (개선) 소규모 대금결제업(현 선불결제업, 발행잔액 100억원 이하)의 진입자본금 요건을 20억원 이상 → 5억원 이상으로 완화

## 나. 신제품 시장출시 규제정비

### 1) 동물장묘업 사체처리방식에 수분해장 방식 추가(농식품부)

### 기업소리 동물사체 처리는 화장 방식이나 분쇄 방식으로 하여야만 하나?

➔ H사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알칼리 용액, 열, 압력을 이용하여 2시간 이내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불가

- (현황) 동물장묘업의 동물사체 처리방식이 화장, 멸균분쇄로 규정되어 있어 수분해장 방식을 신규 개발해도 시장출시에 애로

- (개선) 동물사체처리방식으로 화장, 멸균분쇄방식 이외 수분해장 방식도 추가하여 관련기술 시장 진출 지원 및 동물장묘업 활성화

## 2) 보청기 신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품목 신설 추진(식약처)

### 기업소리 새로운 전달방식 접촉보청기, 보청기 유형에 없어 시장진출 애로!!

➔ A사는 절개술 없이 보청기 일부를 귀에 반영구적으로 거치시켜 소리가 고막과 이소골에 직접 전달되는 신제품 개발완료 → 성능검사를 못해 시장출시 불가

- (현황) 기존 품목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보청기\*를 개발하였으나 적절한 성능기준, 세부 품목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에 애로\*\*
  - \* 수술 대신 외래 시술 방식으로 이소골 음향증폭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보청기로 기존 품목군(골도형, 이식형 등)보다 가격경쟁력 및 안전성 효과가 뛰어나 기술개발 실시
  - \*\* 소분류 품목이 없는 경우에도 중분류로 분류하여 허가절차가 가능하나 성능시험 등에 애로
- (개선) 보청기 소분류 품목 신설을 위해 의료기기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고시 개정 추진

## 3)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 구조 및 검사기준 마련(해수부)

### 기업소리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은 기술 있어도 시제품도 만들지 못해!!

➔ C사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레저·연안구조용 친환경 중형 선박(6~12m) 건조를 추진하였으나, 해당 구조·검사 기준이 불비하여 선박건조 및 시장출시 포기

- (현황) 선박은 유형별(강선·목선 등) 시설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나, 폴리에틸렌 선박의 경우 안전성 검증\* 애로 등으로 구조기준 미비
  - \* 해당 재질의 구조적 강도, 내화성 등 선체재질로 활용가능한지에 대한 검증 불가피
- (개선)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건조 및 시운전·검증(해수부 사업)을 거쳐 폴리에틸렌 선박의 구조 및 검사기준 마련 검토 추진

#### 4) 금속 커튼월 공사 단열재 기준규격 단위 변경 추진(국토부)

##### 기업소리 단열재 KS 기준단위도 있는데 독일 단위규격을 맞춰야 하나?

➔ 창호용 단열재 생산 G사는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단위기준이 독일규격으로 제정되어 있어 국내산 제품은 시장진입이 어렵다고 불만 토로

- (현황) 단열바 단열재 기준규격\*의 일부 단위가 KS가 아닌 독일 공업규격으로 되어 있어 국내산 소재·부품의 시장진입 저해\*\*
  - \* 커튼월 및 개폐창호용 알루미늄 바에 삽입되는 단열재의 강도는 밀도, 인장강도, 표면강도, 신장률, 열전도율, 탄성계수, 용점 기준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함
  - \*\* KS는 국제표준규격에 부합함에도 독일 기준을 명시하여 독일계 제품 우선 사용
- (개선) 단열재(금속 커튼월 공사) 기준 단위를 KS 또는 국제표준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 검증 및 규정 개정 추진\*
  - \* 기준규격 정합성 검토 → 전문가 심의·검증·확인 → 건설기술 관련 위원회 절차 이행

#### 5) 천연·유기농 화장품 원료 승인방안 마련 및 서류 간소화(식약처)

##### 기업소리 유기농화장품에 비싼 수입 원료가 아닌 국내 원료를 사용하고 싶어!!

➔ M사는 유기농화장품 인증 심사를 위해 원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국내 원료는 자료를 찾기 어려워 자료가 확보된 외국산 원료를 비싸게 구입하여 사용

- (현황) 천연·유기농 화장품 인증 취득시 국내산 원료에 대한 심사 자료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업애로 상당
  - \* 유럽은 천연·유기농 화장품 인증기준을 원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, 인증된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원료심사가 면제되어 심사기간 단축 및 서류제출 부담경감 가능
- (개선) 인증기관과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 천연·유기농 원료에 대한 민간자율 승인방안 마련 및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
  - \* 승인된 원료를 취합·공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조한 화장품은 심사시 서류제출 간소화

## 6)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·분야 확대(과기정통부)

### 기업소리 인증기관도 힘들겠지만 기다리고 버티는 중소기업 우리도 속이 태!!

➔ F사는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 특성상 기술개발 및 잦은 인증이 불가피한데 인증수요가 많고 전문인력이 적어 인증을 받을 때까지 약 3~6개월 소요가 된다며 기관 상황이 이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

- (현황)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은 공공판로 진출을 위해 필수이나, 수요에 비해 인증기관·분야가 부족, 기간 장기화\* 및 기업애로
  - \* '19년 대비 '20년의 인증 소요기간은 다소 늘어난 상황으로 인증대기는 1~2개월
- (개선) 품질인증 기관을 신규로 3개 추가지정(2개→5개)하고 기존 인증기관(KTL)의 인증 분야를 확대(7개 → 21개)하여 편의성 제고

## 7)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신고절차 간소화(환경부)

### 기업소리 향초 하나 팔기 너무 어려워, 시험검사 받고 다시 다른기관에 신고를!!

➔ 소규모 공방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K는 향초, 방향제를 제작·판매하나 안전 기준적합확인서 발급에 약 2개월, 환경산업기술원 신고에 1달이 소요되는 실정이라며, 행정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시장출시가 지연된다고 불만 제기

- (현황) 초, 살균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 후 타 기관에 확인 신고를 거쳐야 판매 가능, 시장진입 부담
  - \* ① (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지정 시험·검사기관) 시험·검사 후 안전기준 적합확인서 발급 →
  - ② (환경산업기술원) 안전기준 적합확인 증명서 발급
- (개선) 안전확인 시험·검사기관과 신고기관 간 연계 시스템\*을 구축하여 중복 서류제출 방지 및 제품 신속출시 지원
  - \* '시험·검사기관 → 한국환경산업기술원' 안전기준 적합확인 결과서 자동전송

## 다. 신제품 시장확대 규제개선

### 1) 농산물 수출검역단지 지역제한 규제 완화(농식품부)

**기업소리** 거리가 500m 밖에 안되는데 시·군·구가 다르다고 단지 지정 안돼!!

➔ 경남김해 파프리카 농가 C는 농산물을 선별하는 선과장이 500m 떨어진 부산강서 지역이나 수출검역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없어 수출불가 및 불만

- (현황) 집단화된 지역 내 농산물만 수출이 가능\*한 경우가 적지 않으나, 관련 단지\*\* 지정시 연접 지역을 인정하지 않아 수출애로
  - \* 예 : 파프리카의 경우 중국의 요구로 집단화된 지역 내 재배물품만 중국 수출 가능
  - \*\* 수출검역단지 : 수출 농산물·식물류를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게 재배·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행정구역 단위의 집단화된 생산지역으로 선과장 시설·장비 구비
- (개선) 수출검역단지 지정시 농산물 재배지역과 선과장(선별·포장·보관시설)의 시·군 연접을 허용하여 관련농가 수출확대 유도

### 2) 농림식품 분야 신기술 제품 지방조달 수의계약 허용(행안부)

**기업소리** 똑같은 신기술인데, 농림식품 분야 신기술 제품은 수의계약이 안되다니!!

➔ B사는 조경수 분야에서 신기술인증(농식품부)을 받았으나, 농림 신기술은 다른 신기술 제품과 달리 공공조달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며 형평성 문제 제기

- (현황) 신기술 제품 중 일부\*만 지자체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하여 농림식품 신기술 제품은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확대가 제약
  - \* 산업기술혁신촉진법, 환경기술산업법, 건설기술관리법,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신제품
- (개선) 신기술 제품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, 의견수렴\*을 거쳐 농림식품 분야 신기술 제품을 지자체 수의계약 대상에 검토·반영
  - \* 발주기관인 지자체·학교기관 및 계약상대자인 민간기업, 인증제 소관부처 등

### 3) 용·복합 제품군 직접생산 확인요건 공유 확대 추진(중기부)

#### 기업소리 **셋트 상품인데 한 개 품목만 생산해 조달 납품하란 말인가?**

➔ 영세기업 T사는 경관조명과 가로등을 4명의 인력으로 같이 생산하나, 다른 제품군이란 이유로 직접생산확인시 품목별로 생산시설·인력을 별도 산정하여 한 개 품목만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, 정부조달 판로확대 불가

- (현황)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은 용·복합제품 등 다른 제품군간 확인요건 공유가 불가\*, 관련기업 조달판로 확대어로
  - \* 표준산업분류 내 동일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생산공장 면적, 생산시설·인력 등 공유 허용
- (개선) 가로등·가로등주 등 다른 제품군간 용·복합 제품에 대해 업계·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인요건 공유여부 검토·보완

### 4)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활용요건 완화 및 불편 경감(식약처)

#### 기업소리 **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인데도 의사 5명 동의서, 쓰지 말라는 말인가?**

➔ 3D 프린터 활용기업 N사는 1등급 의료기기인 코성형 연골몰드 변경시에도 의사 5명 동의서 구비 등을 요구하고 있어, 소규모 병원은 사실상 맞춤형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불만 토로

- (현황) 제조·수입업자가 환자맞춤형의료기기\* 제작 시 5명 이상의 의사 동의서를 구비토록 하여 시장 확대 및 제도 활성화 저해\*\*
  - \* 담당의사로부터 모양·구조의 변경을 요청받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의료기기
  - \*\* 또한 관련 안내서상 제조업체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징구·보유토록 오해할 문구가 있으나, 현실적으로 제조업체는 환자를 대면하지 못해 동의서를 받지 못함
- (개선) 환자맞춤형의료기기에 대해 ‘의사 5인 이상 동의서 구비’ 요건을 폐지하고 제조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을 명확화\*
  - \*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 따른 절차수립 및 실행의무를 지며 동의서 징구주체가 아님

## 5)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규제 완화(행안부)

### 기업소리 미국, 유럽에서는 버스 래핑 광고 되는데, 우리나라는 왜 불법이죠?

➔ 선진국 여러 나라와 달리,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면적규제로 다양한 차량 래핑 광고가 불가하여, 광고업계 및 버스 등 운송업계 불만 토로

- (현황) 교통버스 등 사업용 차량 광고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옆면, 뒷면의 2분의 1 등에서만 가능하여 다양한 차량 래핑 광고 곤란
- (개선) 래핑, 도색 등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, 관련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거쳐 표시면적 제한 권한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

## 라. 기업혁신 지원제도 기반강화

### 1) 스마트양식 등 양식산업단지 조성절차 제도화(해수부)

### 기업소리 기술도 있고 기업·지자체 의지도 있는데 아직 제도가 못 따라와!!

➔ 소기업 A사와 강원도는 대서양 연어에 대한 대규모 양식 기술(해수순치 등)을 개발 완료하였으며, 중견기업·대기업의 연어양식 투자 및 산업화 관심 고조

- 민·관 합작으로 기존 산업단지를 스마트양식산업단지로 개편·조성코자 하나, 까다로운 지원요건 및 규제특례 미비 등으로 인해 신속한 사업추진 불가

- (현황) 스마트양식 클러스터\* 사업은 사업대상 부지 100% 확보(소유권·사용권) 요건, 관련 입주특례\*\* 미흡 등으로 사업참여 애로
  - \*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, 대량생산 단지, 가공·유통·수출 단지, R&D, 창업교육, 인력양성 등을 집적화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사업(지자체 신청 → 해수부 선정)
  - \*\* 양식산업단지 지정제도는 있으나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상의 토지수용, 인·허가 의제, 입주업종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련 특례규정이 없어 기존 산단 활용 곤란
- (개선) 양식산업단지 개발시 산업입지법 등 타법의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특례 부여 및 양식업 규모화

## 2)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생태·자연도 등급 현실화(환경부)

### 기업소리 규제 넘어 또 다른 규제가 있어, 보전가치가 없는데 보전 해야하나?

➔ 강원도는 중견기업 B사의 2천억원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3.5만평에 달하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를 개발코자 하나, 관련 적격 조성 대상지가 생태·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어 각종규제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

- (현황) 단지 조성지 일부가 환경변화로 보전 필요성이 낮아졌음에도 1등급 생태·자연도\* 지역 (36.8%)으로 지정, 사업추진에 애로
  - \*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, 자연성,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로서, 1~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며 1등급은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대상
- (개선) 양식단지 조성 대상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생태·자연도 등급을 1등급 → 2등급으로 수정 고시\* 및 기업애로 해소
  - \* 과거 도립공원 지역인 해안 배후습지이나 공원해제 및 주거지, 도로 등이 이미 상당히 형성된 취락지구임을 고려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생태·자연도 등급 변경

## 3) 해외 기술연수생 통역요원 자격요건 완화(법무부)

### 기업소리 기술연수 지원제도는 좋으나 관련한 부대요건 충족이 까다로워!!

➔ 자동차 제작 수출업체 k사는 숙련성 제고를 위해 기술연수 지원제도를 활용하나 통역요원 채용 등 부대요건 규제가 과도하여 힘들다고 토로

- (현황) 한국어능력이 떨어지는 생산직 근로자의 사증발급\*을 위한 통역요원 자격요건\*\*이 까다로워 기술연수 제도\*\*\* 활용이 어려움
  - \* 기초적인 한국어능력(초급↑)을 갖추거나 기업이 별도 통역요원 채용시 사증발급
  - \*\* 해당 외국어 능력 중급 자격증 또는 해당 국가 3년 이상 체류경력 소지자 등
  - \*\*\*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를 국내 본사로 초청(3월)하여 필요한 기술을 연수시키는 제도
- (개선) 일정기간 이상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기술연수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통역요원으로 인정

#### 4) 칩 유통분야 임산물 소득지원 명확화(산림청)

##### 기업소리 **칩이 수목 성장을 저해한다고? 유용한 식품원료가 될 수 있어!!**

➔ 강원소재 P씨는 지역특산품인 칩 녹말, 칩즙 등을 가공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코자 하나 임산물 산림소득지원 여부가 불명확하여 사업추진을 고민

- (현황) 칩은 생산(재배) 분야를 제외한 유통·가공시설 지원이 가능하나, 지침상 안내 미비 등으로 지원여하에 대한 현장 혼동 발생\*  
\*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: 수실류, 버섯류, 산나물류, 약초류, 약용류, 수목 부산물류, 관상산림식물류, 그 밖의 임산물
- (개선) 덩굴류 제거사업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칩을 활용할 경우, 유통·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을 명확화

#### 5)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스마트플랫폼 구축 지원(중기부)

##### 기업소리 **유통환경은 급변하는데 물류지원 시스템은 아직 예전 상태 그대로!!**

➔ 소상공인 B사는 물류 스마트화가 가장 중요한데,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프로그램은 너무 노후화 되고, 입·출금 위주 업무처리에 그친다고 불만 제기

- (현황)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\*의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점포간 네트워크도 부족하여 소기업의 디지털 유통환경 대응에 애로  
\* 소매업자 물류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·시비와 민간매칭으로 37개 센터 운영
- (개선) 물류센터 실태조사를 거쳐 센터별 프로그램 연계, 자동 수·발주, 성능개선 등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 추진

## 6) 치유농업 사회서비스 연계 모델 개발(농진청)

### 기업소리 **농장도 농작물 재배만이 아닌 농장기반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싶어!!**

➔ 전북소재 B협동조합은 농장을 기반으로 농산물 수확·판매 이외 채소정원 분양, 어르신 건강복지, 농업자연놀이, 팜아트클래스 등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익모델을 창출코자 하나 마땅한 지원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애로

- (현황) 다양한 농업자원(원예·동물·경관 등)을 활용한 '치유농업' 이 확산중이나 수익구조 미비로 정체 → 확산·성장기반 조성 필요
- (개선) 현장적용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유농업을 사회서비스와 연계하는 안정적인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 및 성장 기반 마련

## 2. 수요자·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(국무조정실, '22.2월 발표)

### 가. 진입장벽 완화

#### 1)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요건 완화(농식품부)

**기존** 농업인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등이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**전업농만 가입이 가능**하고, 산재·어선원보험 가입자는 겸업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**보험 가입이 제한**되어 불합리한 차별 초래

**개선** 산재·어선원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**규정을 신설하여 보험 사각지대 해소**

→ 자격요건 완화('21.6월) 이후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492명의 농업인에게 사회 안전망 기능 제공('21년 기준)

**조치** '21.6월 농업인안전보험법 개정

## 2)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(농식품부)

**기존** 농업경영 안정 및 영세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제도\*는 가입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

\* 농업인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지원하는 노후생활안정자금

**개선**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60세로 완화

**조치** '22.2월 한국농어촌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

## 3) 소 정액등처리업 허가 요건 완화(농식품부)

**기존** 소 정액등처리업\*을 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마친 보증씨수소\*\* 5마리 이상을 보유해야 함에 따라, 민간은 허가취득이 어렵고 사실상 농협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

\* 종축에서 정액, 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·처리하여 판매하는 업

\*\* 후대검정 등 보증에 6년의 기간 소요

**개선** 씨수소 보유 기준을 기존 5마리에서 '가축개량총괄기관이 선정한 씨수소' 1마리 이상으로 완화

→ 허가요건 완화를 통해 민간·지자체 등으로 사업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업계 활성화

**조치** '22.6 축산법 시행령 개정

## 4)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이륜차 추가(산업부)

**기존** 전기차·수소차는 친환경차\*로 인정되어 취득등록세가 감면(최대 140만원)되나 이와 기능이 유사한 전기이륜차(21년 4.8만여대)는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 야기\*\*

\* 친환경차는 소비효율·성능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장관이 지정(친환경자동차법)

\*\*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차에는 해당되어 전기차와 같이 구매보조금(최대 330만원)은 지원중

**개선**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이륜차 포함\*하여 전기차·수소차와 같이 취득등록세 감면

\* 차종 등 세부기준은 전기이륜차 개발동향, 산업 경쟁력 등을 검토 후 확정 예정

**조치** '22.12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예정

## 5) 재활용 허용 품목·유형 확대(환경부)

**기존**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형광등·태반 등 폐기물의 광범위한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나, 이와 유사한 ① 폐LED조명 ② 폐치아·폐지방 등은 재활용이 불가하고 ③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용도가 연료로만 제한\*

\* 폐치아·폐지방 재활용 불가(의료폐기물은 태반만 재활용 허용), 폐LED조명은 재활용 규정 부재,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연료로만 재활용 허용

**개선** ① 폐LED조명\*과 ② 폐치아·폐지방\*\*은 재활용을 허용하고, ③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연료로만 재활용이 가능했으나 제품 생산(석유화학 원료)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

\* 폐LED조명은 금속·합성수지 원료 등으로 재활용 허용

\*\* 폐치아·폐지방 허용 유형 등은 기술·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시행규칙 마련시 구체화 예정

→ 관련 신산업 활성화(폐지방 활용한 콜라겐 함유 스킨밴드 생산 등), 온실가스 저감(열분해유 활용한 플라스틱 1톤 생산시 석유 대비 CO<sub>2</sub> 85% 감축) 효과

**조치** '22.12월 폐기물관리법·시행규칙 개정 예정

## 6)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 확대(중기부)

**기존**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창의성·전문성이 높은 1인기업에 자금·공간 등을 지원 중이나 도소매업·금융업 등 32개 업종은 기술 발전을 이용한 다양한 1인 창조기업\*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

\*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1인 도·소매업 등

**개선**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 확대

**조치** '22.12월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

## 7) 종묘생산업자 판매제한 완화(산림청)

### 기존

산림자원 관리를 위해 정부가 육성·지원하는 **종묘생산업자\***는 국가나 지자체에만 산림용 종자·묘목 판매가 가능하여 **영업을 과도하게 제한**

\* 우수한 산림용 종자·묘목을 생산·판매하려는 자는 임업종묘기능사 등의 자격을 갖춰 종묘생산업자로 등록('21년 342개 업체),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정부 지원

### 개선

**산업용 종자·묘목**을 국가·지자체외에도 **민간에 산림사업용으로 판매 허용\***

\* 기후변화 대응수종, 멸종위기종 등 생산 가능 수종을 확대(68 → 121종)하여 국가 등의 위탁생산 종묘 이외에는 민간 판매가 가능

### 조치

'21.12월 산림용 종자·묘목 고시 개정 완료

## 나. 진흥체계 개편

### 1) 스마트농업 육성제도 신설(농식품부)

#### 기존

첨단 기술과 농업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,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한 제도 부재

#### 개선

**스마트농업육성법을 제정**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스마트팜을 **혁신밸리·노지스마트팜·스마트축산단지·빅데이터사업 등 집중육성 추진**

→ 미래 유망기술을 호라용한 새로운 농업형태인 스마트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청년 농촌 일자리 확대 등 기대

#### 조치

'22.12월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예정

## 2)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축사 전문 관리업체 육성 제도화(농식품부)

**기존**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, **축사 소독** 등을 위탁 대행하는 업종에 대한 **체계적 인허가제도 부재**

**개선** **우수 축사 전문관리업체 지정제도\***를 마련하여 **우수 위탁·대행업체 발굴 인증 및 지원**

\* 건강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축사내 청소, 소독·방제, 관리 등의 업무위탁 업체 또는 컨설팅 업체 중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를 지정하여 기술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

→ 축사 소독 등 위탁·대행업 시장 확대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 강화

**조치** '22.12월 축산법 개정 예정

## 3) 드라마 제작 지원 펀드 신규 조성(문화부)

**기존** **문화투자 활성화**를 위해 정부가 **펀드를 조성**하여 문화콘텐츠의 제작 초기·소외분야(출판·다큐 등)를 제한적으로 지원중이나 글로벌 OTT 출현 등으로 **국내 드라마 제작사의 경쟁력 약화·위기 직면**

**개선** 위풍당당 콘텐츠 펀드(모태펀드 문화계정)에 **드라마펀드 400억원(240억원 정부 출자)**을 신규로 조성하여 **중소 제작사의 드라마 제작 및 지적 재산권 확보 지원**

**조치** '22.12월 드라마 펀드 조성 예정

## 4) 소셜벤처기업 육성제도 법제화(중기부)

**기존**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등을 집중 육성·지원중이나 이와 유사한 **소셜벤처기업\***('20년 1,509개사)은 **법적 개념·지원 근거 등이 부재\*\***하여 **안정적 지원 한계**

\* 혁신성을 기반으로 사회적·경제적가치를 통합 추구하는 기업(발달장애인의 불안중세 완화 조기 개발 등)으로 사업목적은 사회적기업과 유사하나 사업내용·조직운영은 보다 유연(의무고용 등)

\*\* 사회적기업(사회적기업법), 협동조합(협동조합법), 마을기업(도시재생법) 등은 법적기반 구축

**개선** **소셜벤처기업 정의(사회·경제적가치통합추구기업)·요건(사회성·혁신성장성등)·지원(기술보증·투자 등) 등 법제화**

**조치** '21.7월 벤처기업법령 개정 완료

## 5) 생명공학 육성제도 개편(과기부)

**기존** 최근 **바이오 데이터\*** 활용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생명공학 분야 연구·사업화를 지원하는 **생명공학육성법·제도**에 바이오 데이터 **개념·지원** 등은 부재

\* 빅데이터 기반으로 방대한 바이오 정보(유전체, 임상정보, 약물정보 등)로 이를 연계·공유·분석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·유전자 치료제 등 개발 활용

**개선** 생명공학 육성제도를 임상실험과 함께 **바이오데이터**를 포함하여 **전면 개편\***

\* 세부 사항은 정책연구 등을 거쳐 생명공학육성법에 반영 예정

**조치** '23.6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예정

## 6)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 역할 강화(중기부)

**기존**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**중앙정부 중심**으로 전국에 대해 **일률적 기준**으로 추진되어 **다양한 지역여건 반영에 한계**

**개선** 중앙정부 육성체계와 병행하여 ① **정부-지자체 협력체계\***를 신설하고 ② **정책수립·지원 전반에 시·도 역할 및 지역 여건 반영 강화\*\***

\*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(중기부 장관, 시·도부지사 등) 운영으로 관련 정책 심의·조정

\*\*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,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·지원 등

**조치** '21.7월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완료

## 다. 기업불편 해소

### 1)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간소화(중기부)

**기준** 중소기업 지원사업\* 신청시 필요한 **중소기업 확인서**는 신청인이 매출액 등의 각종 자료를 직접 시스템에 제출(업로드)해야 발급 가능

\* 공공입찰 우대,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,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등

**개선** 국세청 과세자료와 발급시스템을 연계하여 별도 자료제출 없이 확인서 발급

**조치** '22.6월 시스템 개편 예정

### 2)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전자화(행안부)

**기준** 민간이 지자체 보조사업(노인돌봄 등) 수행을 위해서는 보조금 신청 - 지급 -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**지자체에 서면으로 제출**해야하는 부담\*

\* 민간기관은 보조금 신청서, 지출 증빙자료(지출 영수증) 등을 모두 서면으로 제출

**개선**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하여 전과정을 전자적 처리

**조치** '23.12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예정

### 3)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기준 개선(산업부)

**기준** 지방에 기업 이전·신설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고용목표\* 미달시 실적에 따라 환수하나 **최소기준**(약 10%) 이하는 실적이 있어도 전액 환수

\* 기업 투자금의 일정액(3~50%)을 보조하고 투자사업장의 10~70명 이상 상시고용 요구

**개선** 고용달성률이 최소기준 미달이더라도 고용 실적에 비례하여 환수\*

\* '20~'21년 고용목표 최소기준 미달한 총 7개 기업에 6.6억원 보조금 전액 환수

**조치** '21.12월 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완료

### 3. 신산업 현장으로 규제혁신방안(국무조정실, '21.11월 발표)

#### 가. 에너지·신소재 분야

##### 1)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

(산업부, 친환경자동차법 개정, '22.12.)

###### 현장애로

수소충전소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가·지자체의 국·공유재산 내 수소충전소\* 설치시 임대료 경감\*\* 혜택을 제공중

\* 국회, 세종청사 등 총 36기

\*\* 연간 3~4천만원의 평균 임대료 중 50% 감면(22년부터는 80% 감면) <수소충전소>

→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 수소충전소(현재 18기)\*에 대해서도 임대료 경감 필요

\*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 휴게소 15기, 인천공항공사 부지 내 3기

###### 개선방향

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·운영시 임대료 경감

###### 기대효과

수소충전소 부지확보 및 운영 부담 해소로 수소인프라 확충에 기여

##### 2)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(KS) 제정

(산업부, 국가표준(KS) 제정, '27.12.)

###### 현장애로

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사용 후 폐배터리 발생\*이 급증

\* ('20) 4,700여개 → ('25) 13,000여개 → ('30) 80,000여개

→ 폐배터리에서 추출되는 원료\*의 재활용을 위한 표준(순도 측정, 시험분석법 등)이 없어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저해

\* 황산코발트, 황산망간, 탄산리튬, 수산화리튬 등

###### 개선방향

폐배터리 추출물질의 인증기준, 시험방법 등 관련 국가표준(KS) 및 우수 재활용제품(GR) 품질인증기준 개발

###### 기대효과

폐배터리 재활용 산업기반 구축으로 자원순환 체계 마련 및 시장 선점 기대

\* '30년 시장규모 20조원 예상

## 나. ICT 융합 분야

### 1) 공지하철 객차 Wi-Fi 속도 상향

(과기정통부,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, '22.3.)

#### 현장애로

지하철 객차 Wi-Fi 공유기용으로 기존의 주파수 대역(2.4GHz, 5GHz)이 포함되고 Wi-Fi 속도가 낮아\* 6GHz 대역을 신규 공급('20,10)하였으나,

\* 커피숍 388Mbps, 지하철 역사 367Mbps, 지하철 객차 70Mbps

→ 6GHz 대역은 방송사, 통신사 등 통신 용도로도 사용중이어서 혼간섭 우려로 인해 전파 출력을 제한(25mW), 사실상 사용 불가

#### 개선방향

지하철 객차 공유기의 6GHz 출력제한 규제를 완화(25mW → 250mW)하고, 외부 기지국에서 지하철 수신장치로 보내는 전파속도도 상향(LTE → 5G)하여 지하철 객차 내의 Wi-Fi 속도를 10배(70 → 700Mbps) 상향 추진\*

\* 서울 지하철 2호선 대상 실증 완료('21.6~11월)

#### 기대효과

국민들의 데이터 무료이용 편의 제고

### 2) 소프트웨어(S/W)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간소화

(과기정통부,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안내서 개정, '22.12.)

#### 현장애로

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S/W와 인프라(서버)에 대해 각각 클라우드 보안인증\*을 받아야 함

\*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인증(한국인터넷진흥원)하는 것으로, 인증대상에 따라 IaaS(인프라), SaaS(S/W) 등으로 구분

→ 보안인증을 받은 S/W를 다른 인프라(서버)에 설치하려는 경우, 해당 S/W의 보안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시간 소요

#### 개선방향

인프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검항목의 경우, 보안인증 면제

#### 기대효과

인증항목 일부 면제에 따른 서면 평가기간 단축(4~5일 → 2~3일) 및 사업자 부담 완화

## 다. 무인이동체 분야

### 1)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

(국토교통부, 연구용역 진행('21.6~) 후 가이드라인 마련, '22.12.)

**현장애로** 인구 밀집지역 건축물 밀집지역, 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드론이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\*

\*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1, 2호

→ 밀집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고, 위험한 비행행위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여 도심 내 드론 비행이 과도하게 제한

**개선방향** 도심 내 드론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안전기준\* 마련 ('밀집지역' :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등 설정, '위해를 초래할 우려' : 비행고도 하한 등 설정)

\* 드론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중('21.6~12)

**기대효과** 도심 내 드론 운용 활성화 촉진

## 라. 바이오헬스 분야

### 1) 의약품 우선심사제도 개선

(식약처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, '22.1.)

**현장애로** 신약, 항암제, 희귀의약품, 감염병 치료제(코로나19 등) 신약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시 우선심사제도를 운영중

→ 미국 FDA 등과 달리 심사기간, 제출자료 범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, 예측성이 낮음

**개선방향** 약사법 시행 ('22.1.21. )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\*을 통해 심사기간(기준 60~120일 → 40일 이내), 제출자료 범위\*\* 등 세부기준 마련

\* 입법예고('21.10.19~12.20) → '22.1.21 시행 예정

\*\* 우선심사 대상 증명자료, 개발경위, 제조방법, 용법·용량 및 효능·효과 등

**기대효과** 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및 국민건강 보호 증진

## 2) 의약품 제조·품질검사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

(식약처, 「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」 업무처리 지침 개정, '21.12.)

### 현장애로

의약품 제조용 또는 품질검사용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, 의약품 제조 등에 필수적인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면제 중

→ 해당 화학물질이 수입요건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수입업자의 질의시, 식약처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하고 있으나,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애로

### 개선방향

의약품 제조·품질검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요건 면제 대상물질 여부 판단기준, 세부 사례 등을 제공

### 기대효과

민원인(신청자)의 이해 도움과 담당직원의 행정처리 향상